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지침개정 연혁>

- ▣ 2005. 09. 25. 관리지침 제정
- ▣ 2008. 07. 03. 일부개정
- ▣ 2010. 06. 10. 일부개정
- ▣ 2011. 10. 01. 통합지침 제정
- ▣ 2012. 05. 23. 일부개정
- ▣ 2012. 06. 18. 일부개정
- ▣ 2012. 08. 06. 일부개정
- ▣ 2013. 07. 01. 전면개정
- ▣ 2013. 12. 02. 일부개정
- ▣ 2014. 04. 28. 일부개정
- ▣ 2014. 07. 07. 일부개정
- ▣ 2015. 02. 16. 일부개정
- ▣ 2016. 03. 02. 일부개정
- ▣ 2016. 05. 16. 일부개정
- ▣ 2016. 07. 01. 일부개정
- ▣ 2017. 04. 26. 일부개정
- ▣ 2018. 03. 01. 전면개정

법 무 부
체 류 관 리 과

목 차

I. 총 칙

- 1. 목 적 1
- 2. 지침 상 기준 1

II. 기본원칙 및 심사기준

- 1. 기본원칙 3
- 2. 심사기준 3
 - 가. 일반 심사기준 3
 - 나. 개별 심사기준 4
 - 1) 대 학 별 4
 - 2) 학 위 증 5
 - 3) 재정능력 6
 - 4) 제출서류 8
 - 5) 기타 사항 9

III. 사증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 1. 유학 (D-2-1 내지 D-2-8) 자격 12
- 2. 어학연수 (D-4-1 또는 D-4-7) 자격 17
- 3. 기타 가족초청 등 19

IV. 체 류 관 리

- 1. 외국인 등록 21
- 2. 등록사항 변경 21
- 3. 체류자격 변경 22
- 4. 체류기간 연장 27
- 5. 자격외 활동허가 33
- 6. 시간제취업 35

V. 외국인유학생 등의 관리 및 신고

- 1. 학교의 장의 의무 42
- 2. 사무소장 등의 조치사항 46

VI. 행정사항 53

목 차

VII. 붙임자료 53

목 차

| | | |
|-----|-----------------------------|----|
| 1 |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시설 예시 | 1 |
| 2 | 논문지도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 4 |
| 3 |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 6 |
| 4-1 | 시간제취업 대학작성 확인서 | 8 |
| 4-2 | 시간제취업 고용주작성 확인서 | 10 |
| 5 | 번역자 확인서 | 11 |
| 6 | 외국인 변동신고 주의서 | 12 |
| 7-1 | 2017년 인증평가에 따른 업무처리 기준 | 13 |
| 7-2 | 인증평가 불법체류율 조회 및 산정식 | 15 |
| 8-1 | 정부출연 연구기관 목록 | 18 |
| 8-2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19 |
| 8-3 | 특정연구기관 | 20 |
| 9-1 | 중국 학력·학위 인증보고서 검증방법 | 21 |
| 9-2 | 중국 학력·학위 인증방법 변경 | 24 |
| 9-3 | 중국 학력·학위 인증보고서 참고사항 | 25 |
| 10 | 유학생 학력·학위 입증서류 변경 안내문 | 26 |
| 11 | 아포스티유 (Apostille) 협약관련 참고사항 | 28 |
| 12 | 결핵고위험국가(19개국) | 30 |

1. 목적

- 외국인유학생의 효율적 관리와 체류지원을 위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
- 관련 법령 및 그간의 지시문서 등으로 시달된 외국인유학생 관련 사항을 종합 규정함으로써 통일성 있는 업무처리 기준 제시

2. 적용대상 및 유형

- (적용대상)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11. 유학(D-2))
- 본 지침 적용대상별 세부약호 및 대상

| 약호 | 대상자 | 비고 |
|-------|-----------|--------------|
| D-2-1 | 전문학사과정 유학 | |
| D-2-2 | 학사과정 유학 | |
| D-2-3 | 석사과정 유학 | |
| D-2-4 | 박사과정 유학 | |
| D-2-5 | 연구과정 유학 | |
| D-2-6 | 교환학생 유학 | |
| D-2-7 | 일-학습연계 유학 | '16.05.16 신설 |
| D-2-8 | 단기유학 | '16.05.16 신설 |
| D-4-1 | 한국어 연수 | |
| D-4-7 | 외국어 연수 | |

- ① D-2-1(전문학사)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대학의 전문학사 학위 과정 유학생
- ② D-2-2(학사과정)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 유학생

- ③ D-2-3(석사과정) : 고등교육법에 따른 석사학위 및 학·석사 통합학위 과정 유학생
- ④ D-2-4(박사과정) : 고등교육법에 따른 박사 및 석·박사 통합학위 과정 유학생
- ⑤ D-2-5(연구과정) :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전문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실험실습 및 논문작성을 위하여 연구하는 유학생
- ⑥ D-2-6(교환학생) : 해외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등에 의해서 상호 학생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유학생
 - ※ 단, 복수학위 등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국내 대학의 졸업증서와 학위가 수여 되는 경우는 일반 학위과정으로 관리
- ⑦ D-2-7(일-학습연계 2016.5.16. 신설) : 정부초청 장학생 등으로 선발되어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의 정규 학위과정에서 유학하고자 하거나 재학중인 유학생
 - ① (정부초청장학생)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사업(GKS¹)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② (외국정부선발 장학생²) 외국정부에서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학생
 - ③ (대학선발 이공계 우수 장학생) 입학 시 또는 입학 후 교비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 받는 학생
- ⑧ D-2-8(단기유학, 2016.5.16. 신설) : 외국대학 재학생으로서 국내 대학의 정규 학위과정 외에 1년 이하의 단기간 유학하고자 하는 유학생
 - (계절학기) 정규 학기 외에 방학 등에 개설되는 과정에 입학허가를 받고 단기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 (방문학생) 학생 개인자격으로 국내대학에 입학허가를 받고 단기간 유학하고자 하는 경우
- 인증대학이란 법무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대학으로 지정한 대학을 말함

1)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Global Korea Scholarship 프로그램 대상자로 학위를 취득을 마친 경우에 체류혜택 부여

2) '18. 3. 1부로 대학선발 이공계 우수장학생과 함께 대상자 확대

※ 일반대학(비인증대)은 인증대, 모집제한대학, 컨설팅 제학을 제외한 대학임

○ 하위대학이란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함

① **모집제한(비자제한) 대학** : 인증위원회 평가결과 사증발급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대학

② **컨설팅 대학** : 인증위원회 평가결과 사증발급 심사강화 대상으로 지정한 대학

※ 외국인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위원회 평가 결과 등 붙임자료 참조

○ 외국인유학생 또는 유학생이란 '어학연수'라고 따로 구분하지 않는 한 유학(D-2-1~8) 및 한국어연수(D-4-1), 외국어연수(D-4-7) 모두를 말함

II 기본원칙 및 심사기준

1. 기본원칙

- 유학생 선발 및 관리가 우수한 인증대학 유학생에 대해서는 제출 서류를 대폭 완화하여 대학의 유학생 선발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반면,
- 유학생 선발 및 관리가 부실한 부실 대학 등 유학생에 대해서는 제출 서류에 대한 검증방법을 강화함으로써 유학(연수)을 국내 체류방편(불법취업 등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 방지
- 유학생정보시스템(FIMS³)으로 확인이 가능한 정보는 민원인에게 별도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민원편의 강화

2. 심사기준

가. 일반 심사기준

- **(관리능력)** 유학(예정) 대학의 유학생 선발기준 및 학사관리 능력에 따른 차별화된 심사기준 적용
- **(학업능력)** 학위증 등 학사 능력 심사 시 재외공관 사증 발급자, 국내

3) FIMS : Foreign student Information system의 약자

체류자격 변경자(사증발급인정서 포함)에 따른 차별화된 검증 기준 적용4)

- (재정능력) 유학경비는 국외 조달을 원칙5)으로 하며, 시간제 취업허가 등 자격외 활동허가 등을 통해 형성된 금액에 한하여 국내 조달 예외 인정
 - 심사 시 표준입학허가서 상 평균 소요경비 및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기준 등을 반영한 실질적인 소요경비 심사

나. 개별 심사기준

1) 대학별(불입 인증위원회 결과 및 대학별 업무처리 기준 참고)

가) 인증대학 유학생

○ 사증발급 (인정서) 및 체류 자격 변경(학교변경 포함) 시

▶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 (불입 10의 인증대학 목록 참고)

-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하고 체류기간 상한 부여(D-2-1~7: 2년, D-2-8: 최대1년, D-4-1, D-4-7: 6개월) 원칙(모든 국가 국민)

※ 동 규정은 대학 측이 외국인유학생 입학요건 확인을 면제하는 규정이 아니며, 단지 해당 증빙서류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만을 면제하는 것임. 대학 측은 관련된 증빙서류를 외국인유학생으로부터 징구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확인하고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함

▶ 인증대학 (불입 p10의 인증대학 목록 참고)

-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하고 체류기간 상한 부여(D-2-1~7: 2년, D-2-8: 최대1년, D-4-1, D-4-7: 6개월) 원칙(단, 법무부장관 고시 국가 국민은 제외)

<법무부장관 고시 국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총 21개국)

○ 체류기간 연장 시

- 재정입증서류 생략가능6)하고 체류기간 상한(D-2-1~7: 2년 D-2-8: 최대년 D-4-1,

4) 학업성취 의지, 출석률을 통한 유학 활동의 성실성을 종합 심사

5) 체류비 국외 조달 원칙과 국내 조달의 경우도 투명하게 취업허가를 받은 부분만 인정하도록 개정('18. 3. 1)

D47: 6개월부여 (장관 고시국가 국민 여부는 불문하되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이수학점 기준 평점 C학점 이상, 어학연수생은 출석율 70% 이상인 경우에 한함)

나) 하위대학 유학생

○ 모집제한(비자제한) 대학

- 사증발급(인정서) · 자격변경⁷⁾ · 해당 대학으로의 편입(학교변경) 제한
※ 박사 · 연구과정 · 교환학생(D-2-4 내지 D-2-6)은 제한대상이 아님⁸⁾
- 재학생의 체류기간 연장은 허용하되 성적 및 출석률이 저조한 자에 대해서는 불법취업 가능성 등에 대한 정밀 심사

○ 컨설팅 대학

- 사증발급 (인정서), 자격변경, 기간연장, 학교변경(편입) 시 학력 및 재정능력, 불법취업 가능성 등에 대한 면담 또는 실태조사 등 정밀 심사^{*}
- * 교육부 대학알리미 사이트 (www.academyinfo.go.kr)의 대학별검색, 해당 학교 홈페이지의 모집 요강과 표준입학허가서를 비교하는 등 정밀 심사

다) 일반대학 유학생

- 인증대 및 하위대학 명단에 속하지 않는 대학의 유학생
-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의 일반처리 기준에 따라 심사

2) 학위증 등

가) 사증발급(재외공관)

- 현지대학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졸업여부 등 철저 확인

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체류자격 변경(사무소 또는 출장소)

6) (판례)재정입증 서류를 생략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예외적인 경우 원칙적으로 제출서류로 재정입증 서류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체류자격 제도의 형해화를 막기 위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관할관청은 국가별, 연수기관별 불법체류자 현황 및 실태 등에 관한 통계적 자료에 근거하여 신청인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정인에게 다른 신청인에게는 요구하는 않는 서류를 요구하였다거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서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2017 구단76961, 서울행정법원)

7) 비자제한대학으로 지정될 당시 해당대학에서 D-4로 재학 중인 학생들이 해당 대학의 학사학위 과정에 진학할 경우에도 신규모집(자격변경에 해당)에 해당되므로 모집이 제한됨

8) 2017년 인증 평가에 석사과정이 포함됨에 따라 '18.10. 1부터 석사과정도 비자발급 제한대상에 포함('18.3.1)

○ (학위증 공증) 법무부장관 고시 21개국 출신 국민 또는 동 국가 소재 대학 등에서 학위(학력) 취득자는 아래 ㉠, ㉡, ㉢ 중 택일

㉠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위(학력) 등 입증서류

㉡ 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학위 등 입증서류

㉢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 (중국 내 학력·학위 취득자에 한함)

※ 단, 국내 대학 등에서 학위(학력)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을 받지 않은 학위증 제출 허용(학위증 원본과 출입국정보시스템 기록 등으로 확인 후 사본 저장)

- (상기에 해당하지 않은 자) 학위증 등 위변조 혐의가 있을 경우 한해 사무소장(출장소장) 재량으로 상기 ㉠ 내지 ㉢ 항에 해당하는 서류징구 가능

<적용예시 >

가. 중국인이 미국에서 학위 (학력)를 취득한 경우 : Apostille 확인, 미국 주재 한국 영사 또는 한국주재 미국 대사관의 영사확인

나. 미국인이 중국에서 학위 (학력)를 취득한 경우 :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인증보고서 또는 주 중국 한국공관의 영사확인

다. 최종학력이 고등학교인 경우 : 학력입증 (졸업증명서)

라. 최종학력이 대학이상인 경우 : 학위입증 (학위가 표시된 졸업증명서도 가능)

마. 편입인 경우 : 최종학력 (학사 이상인 경우 학위) 및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재학증명서 (재학 중인 경우에 한함)제출

3) 재정능력⁹⁾

○ (적용업무)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체류자격 변경, 기간연장 업무 처리 시

○ (입증기간) 1년간(어학연수 6개월)의 재정능력 입증¹⁰⁾을 원칙으로 함

9) 신청인의 재정능력을 고려하는 이유는 신청인이 충분한 재정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취업활동 등 허가된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할 유혹에 쉽게 빠질 가능성이 있어 결과적으로 체류자격제도를 형해화 할 우려가 있으며, 재정능력 입증의 경우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유학, 일반연수의 체류자격을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고 학비,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것임(17구단57526, 서울행정법원, 2017.8.29)

- 1년(어학연수 6개월) 미만 체류허가 자에 대해서는 허가기간 만큼만 재정능력 입증 요구

※(예시) 3개월 체류허가 시: 등록금 + 체재비(70만원×3개월)

- 1년 이상 체류허가 자에 대해서는 1년간의 재정능력 입증서류 징구

○ (재정능력범위) 재정능력은 등록금 + 체재비 일체를 포함

- 표준입학허가서 상 소요경비 및 경비 조달방법을 참고하여 실질적인 소요경비 심사

< 등록금 및 체재비 심사기준¹¹⁾ >

- 전문학사 이상 : 수도권 (미화 20,000 달러 상당¹²⁾), 비 수도권 (미화 18,000 달러 상당)

- 어학연수생 : 미화 9,000 달러 상당

※ 상기 금액은 교육부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공시된 ‘15년 대학별 연간 등록금¹³⁾ 및 보건복지부 고시 ‘16년 기준 중위소득 43%(주거급여 선정기준¹⁴⁾), 생활비, 교재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임

○ 심사기준

- 시증발급, 시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시 국내외 은행이 발급한 본인 또는 부모¹⁵⁾의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재정능력 확인

※ 단, 체류기간 연장 및 어학연수 후 유학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은 국내에 있는 은행이 발급한 본인 잔고증명서만 인정

- 부모의 직업 및 자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재정능력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소장 또는 공관장 재량으로 잔고

10) 재정능력 입증 방법인 은행잔고제출은 입증기간인 1년 간 해당 금액을 사용할 예정임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급격한 잔고 변화 시 이에 대한 합당한 사유 소명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과거 기간연장시 은행잔고를 제출한 경우 심사관은 지난 1년간의 잔고 변화를 요구하여 재정능력 여부를 심사할 수 있음

11) 예금잔고 입증 시 : 반드시 본인명의(금융실명제)의 계좌를 의미하며, 해당 계좌를 통해서 유학기간 지속적으로 재정 능력이 입증되어야 함
☞ 친동생, 부모 등 친인척명의의 계좌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며, 재정능력 입증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계좌에 대한 1년치 거래내역(은행발행)을 징구하여 심사, 기존에 입증하였던 거래 계좌를 변경한 경우 기존 것과 현재 제출한 계좌 2개에 대한 거래내역을 요구하여 심사하며, 체류기간연장을 위한 증빙서류로 사용 후 해당 금액을 출금하는 등 신빙성이 없는 경우 체류기간을 3개월, 6개월 등을 부여하여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금액이 남아 있고 정상적으로 체류경비로 지출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기간연장 허가함

12) ‘상당’ 이라함은 대학마다 등록금, 장학금, 입학료 등이 상이하므로 이를 반영(고려)하여 심사 가능

13) 수도권(서울 및 경기) 약 760만원, 비 수도권 약 620만원

14) 1인기준 월698,677원, 2인기준 월1,189,640원, 3인기준 월1,538,978원

15) 우선적으로 부모로 한정, 부득이 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형제·자매 가능, 부모가 있는 경우 다른 사람 엄격히 제한

증명서에 상당하는 서류(재직증명서, 부모의 자산증명서 등) 징구 가능

- 대학, 자국 대사관 등으로부터 장학금(수업료 및 체재비)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 총·학장 발행 장학금 지급확인서, 대사관 학비지원 확인서 등으로 재정입증서류 대체 가능¹⁶⁾
- 자격변경 및 기간연장 시 재정능력 입증에 소요되는 경비가 국내에서 조성되지 않았음을 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함. 만약, 국내에서 경비가 조달된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신청인이 입증해야 함
- 심사의 기준이 되는 근거자료(잔고증명 등)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¹⁷⁾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의 사실관계 변화이므로 정밀심사

○ (적용 특례 1)¹⁸⁾ 재정능력 입증 1/2 범위내에서 완화 적용

- (적용대상) 체류기간 연장 또는 동일대학에서 체류자격 변경* 시

* 동일대학에서 체류자격 변경은 어학연수(D-4-1/D-4-7) 후 같은 대학에서 유학하기 위해 유학(D-2)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 (적용내용) 사증발급 등에 적용하는 재정능력 입증 기준의 1/2 범위로 완화한 기준 적용

☞ (예시) 수도권 대학 유학생에게 2년 체류기간을 부여 하더라도 일반 규정에 따라 1년간의 재정능력(2만불) 입증 자료만 징구하게 되며, 동일대학에서 연장할 경우 1/2 완화를 적용하여 최종 미화 1만불 상당의 재정능력만 입증하면 됨

○ (적용 특례 2) 입증 면제

- (국비유학생¹⁹⁾)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국비유학생(GKS 장학증서) 자격을 확인 받은 경우 사증(인정서)발급,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시 장학증서로 재정능력 입증서류 대체

16) 종교단체, 재외동포재단 등에서 유학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단체장의 확인서(지원금 정확하게 명시) 및 고유번호증으로 심사

17) 심사 종료전 잔고의 50%이상 인출 시 재정능력 입증 再요구, 70%이상 변화 시 사실관계 변화를 이유로 체류허가 억제

☞ 6개월 이상 은행계좌의 예치 요구는 체류기간연장 등을 하는 유학생들의 실질적인 재정능력을 모두 조사확인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상, 최소한의 불가피한 요구로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잔고증명을 제출 후 인출된 사실을 알고 잔고증명을 다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 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재정능력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2017구 단60010, 서울행정법원, 2017.11.29)

18) 유학생 확대 지원의 일환으로 2016. 5.16부로 재정능력 기준 완화, 반액으로 감면하되 원칙적으로 국내 본인계좌 예치금만 인정

19) 국방부 초청 국방대학교, 합동군사대학교 재학생도 포함

- (재외동포)²⁰ 부모 또는 조부모가 국내에서 재외동포(F-4) 또는 방문취업(H-2), 영주(F-5)자격 또는 국적을 취득하여 체류하고 있는 경우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기간연장 등)시 재정능력 입증 면제 가능

※ 단, 유학중 유학경비를 보조할 부모, 조부모가 국내에 없는 경우 재정능력 의무가 재 부여됨, 이는 유학생이 재정문제로 학업에 전념할 수 없을 것이 염려한 조치임

【인증대 재정능력 서류 제출범위】

| 구분 | 인증대 | | 일반대, 컨설팅대 |
|---------------|--------------------------|---------------------|---|
| | 불체1%미만 | 일반 | |
| 사증발급 | · 제출면제, 단 대학이 재정능력 자체 검증 | · 좌동, 단 21개국 국민은 제외 | · 2만(비수도권 1만8천) 달러 상당의 재정능력 관련 자료 법무부에 제출 |
| 자격변경 | 일반변경 (타대학 편입학 등) | · 상동(제출면제) | · 상동 |
| | 동일대학 (D4→D2) | · 상동(제출면제) | · 1/2 완화 제출 |
| 기간연장 (동일대학내) | C학점이상 출석율 70% ↑ | · 제출면제 | · 1/2 완화 제출 |
| | C학점미만 출석율 70% ↓ | · 1/2 완화 제출 | |
| GKS 장학생, 재외동포 | | · 제출면제(장학증서 등 서류제출) | · 제출면제(장학증서 등 서류제출) |

4) 제출서류 유형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수학능력 입증서류

- 표준입학허가서 :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1회*의 사증발급(자격변경)에 한해 유효, 총장·학장 등 권한 있는 자가 발급한 것일 것

* 단, 단기사증 (C-3) 발급 시 표준입학허가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예외 인정

- 학력 입증서류 : 학위 등 인증보고서는 대학담당자의 원본 대조필인이 있을 경우 사본도 가능하고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한 학력입증서류는 유효기간 내에서만 인정(통상 발급일로부터 30일, 연장 가능)
- 정부초청장학생 :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한 경우, 학력증명서는 국가에 관계없이 국제교육원 또는 대학에서 발행한 사본(원본대조필) 징구로 대체(공증 불요)
- 기타 : 재학증명서, 출석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20) 외조부모도 포함됨, F-4 또는 H-2 자격을 보유한 적이 있는 영주, 거주, 결혼이민자의 경우도 관계가 입증되면 면제

○ 재정(학비+체제비)능력 입증서류

- 잔고증명서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잔고증명서 상에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단, 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만 인정)
 - 단, 잔고증명서는 허가기간 동안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단기 입출금 등으로 발행된 경우 심사시 시차를 두어 잔고 여부를 재확인 할 수 있음
- 통장사본 : 유학중 주거래 은행 계좌를 법무부에 신고한 경우 통장에 최근 1년간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잔고를 유지하고, 체제비(70만원 수준)가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것이 확인 되는 경우 잔고증명서 제출 생략
 - 국내 시간제 취업허가에 따른 통장 입금 급여도 체제비로 인정
 - 입증방법 : 은행에서 발행한 최근 1년간의 통장 거래내역 제출
 - 계좌변경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된 계좌는 변경할 수 없음
 - 처리방법 : ICRM 비고란에 지정계좌 번호 및 심사내용 입력

○ 제출서류 공통 주의사항

- 제출서류 중 유학생 및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 재정능력 입증서류(예시, 잔고증명서, 통장, 장학금증명서, 입출금내역서 등) · 학력 입증서류 · 자격증은 원본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
 - ※ 사증(인정서) 및 체류허가 불허 시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사본에 원본대조필 후 원본은 반환
- 첨부서류가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되어 있을 때는 번역자 확인서(붙임 5) 및 번역문을 첨부(공증 불요)
- 대학의 대리 신청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시에는 대학입학 전형 시 대학에 제출했던 서류를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제출하는 점을 감안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재량으로 완화하여 심사함으로써 유학생 피해 방지

5) 기타 사항

- 고등학교 이하의 정규교육기관²¹⁾에서 유학 또는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증발급대상임
 - 국내에 부모가 있는 경우: 방문동거(F-1) 자격 또는 동반(F-3)자격
 - 국내에 후원자(개인 또는 단체)가 있는 경우: 일반연수(D-4-3, 고등학교 이하 연수 등) 자격(고등학교 이하 외국인유학생 지침)
 - ※ 고등학교이하의 유학 또는 연수는 국내 후원자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기술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으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는 연구(E-3) 사증발급대상임
- 재외공관장 및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
 - 시행규칙 제10조 각호(아래 표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외 사무소장(출장소장)이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국민에 대하여 사증발급을 억제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국가보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반국가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
3. 법무부장관이 그 사증발급에 관하여 특별히 승인을 얻어야만 사증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증발급규제자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기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따로 지정한 국가의 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

2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4조) 의한 고등학교, 특별법/외국인학교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국제학교 등)을 의미함

1. 유학(D-2-1 내지 D-2-8) 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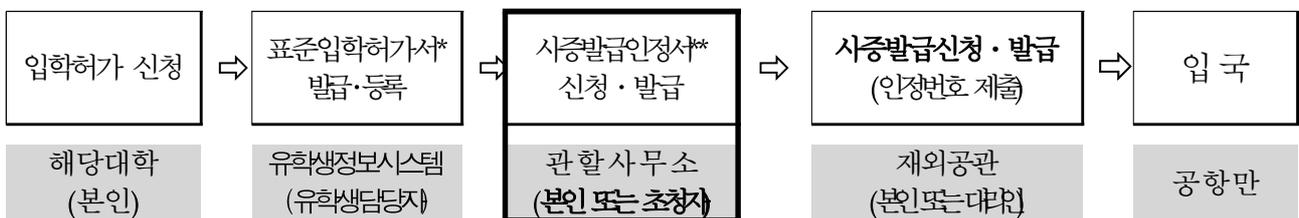
가. 대상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²²⁾ 및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야간대학²³⁾ 포함)으로 우리부에서 운영하는 유학생정보시스템(FIMS)에 등록된 교육기관 및 학술연구기관
 - ※ 단, 야간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및 한국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단,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은 인정)은 고등교육법 규정 및 FIMS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유학(D-2) 사증발급 제외 대상임(출입국심사팀 - 11245, '09.4.27)
 - ※ 전문대학 졸업자(예정자 포함) 중 전공심화 과정에 계속 유학을 원하는 경우, 학교 변경 및 체류기간연장 허용(교육부 요청사항: 전문대학정책과-3101)

나. 해당자

- 상기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또는 단기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학교 간 학사교류 협정에 의한 교환학생 포함)
 - ※ 단, 일·학습 연계유학(D-2-7)의 외국정부 선발 장학생 및 대학선발 이공계 우수장학생은 체류자격변경으로만 관리됨

다. 발급 절차



22)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로서 방송대학 이하는 유학대상에서 제외

23) 대학원의 종류(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행정대학원)와 관계 없이 학위과정인 경우 야간과정을 허용하되 학사이하의 야간과정은 허용 안됨 (사례: 전문학사 이후 전공심화과정을 야간으로 다니는 경우 허용 않음, 취업자격으로 전환을 유도 후 야간과정을 다니도록 안내)

- * 입학이 결정되면 우리부 유학생정보시스템(FIMS)에서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 등록(허가서 왼쪽 상단에 표준입학허가서 번호 생성)하고 출력하여, 총·학장 직인을 날인한 후 유학생에게 송부

라. 대상

-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국민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
- 중국 국민 중 인증대학 입학예정자, 정부초청장학생, 교환학생 (D-2-6): 사증 발급 대상
 - 그 외 중국 국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
- 그 밖의 외국인유학생: 사증 발급 대상
- 특례
 - ① 인증대학 석·박사과정 입학예정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 전자비자 발급도 가능
 - ② 불체율 1%미만 인증대학 입학예정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 사증 발급인정서 또는 사증 발급 대상(편의에 따라 각 대학에서 선택)

<대상별 사증 발급 유형표>

| 대학별 | 국가별 | 학생 유형 | 사증 발급 | 사증발급인정서 | 전자비자 |
|----------------|---------------------|-----------|-------|---------|------|
| 일반대 | 일반 | 모든대상 | ○ | × | × |
| | 중국 | 대상일반 | × | ○ | × |
| | | 정부초청,교환학생 | ○ | × | × |
| 인증대 | 일반 | 모든대상 | ○ | × | × |
| | 중국 | 모든대상 | ○ | × | × |
| | 석사·박사(국적무관) | | ○ | × | ○ |
| 불체 1%미만 인증대 | 어학연수,전문학사,학사 (국적무관) | | ○ | ○ | × |
| | 석사·박사(국적무관) | | ○ | ○ | ○ |

※ 단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국민은 사증발급인정서만 발급

마. 신청 장소

○ 사증발급인정서

- 입학예정대학²⁴⁾ 소재지 관할 사무소(출장소)
- 사증포털시스템²⁵⁾(www.visa.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유학생담당자에 한함)

○ 사증

-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원칙

바. 발급 내용 및 권한의 위임

| 대상자 | 약 호 | 발급내용 | 허가권자 |
|-------------------------|--------------|--|-----------------|
| 전문학사 ~ 박사과정 | D-2-1~D-2-4 | 체류기간 2년 이내, 단수 ²⁶⁾ ※ 인증대학 유학생은 체류기간 상한 (2년) 부여 |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
| 일-학습연계 유학 ^{**} | D-2-7 | | |
| 연구과정 ^{***} | D-2-5 | 체류기간 2년 이내, 단수 | |
| 교환학생 | D-2-6 |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 |
| 국방부 초청 수탁교육생 | D-2-2~ D-2-4 | 체류기간 2년 이내, 단수 | |
| 단기유학 ^{****} | D-2-8 |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 재외공관장* |
| 인도국민 | D-2-1, D-2-5 | 체류기간 2년, 유효기간 5년 복수 ※ 단, 교육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교육기간 동안 유효한 복수 사증 | |
| 어학연수생 | D-4-1, D-4-7 | 체류기간 6개월 이내, 단수 | |

* 시행규칙 제10조 해당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국내 대학의 전문학사 이상의 정규 학위과정에서 유학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 석사 후 연구과정 등 연구조교 · 연구보조원에 준한 연구 활동 또는 박사 후 연수활동(전공분야 불문)을 하며 체재비²⁷⁾ 정도의 연구수당을 받는 자가 해당

**** 외국대학 재학생으로서, 국내 대학의 입학허가를 받고 1년 이하의 단기간 유학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계절학기, 방문학생 등), 다만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 국민 중 각 협정에 따라 그 기간 동안 국내에서 유학활동이 가능한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 별도의 유학사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유학활동 가능(체류관리과-1554호, '17.3.13.)

24) 분교 입학생은 분교소재지 (사업자등록증 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소재지) 관할 사무소 (출장소)에서 처리

25) '12.1.1부터 온라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확대 (체류관리과-6441, ' 11.12.22)

26) 시행규칙 제9조 ①항 2호 반영, 단, 우리나라와 복수사증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 국민은 협정 적용

27) 유학생의 체재비를 동 지침에서는 월 70만원 정도로 규정하고 있음

사. 제출 서류

1) 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인정서 신청 시 사본),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²⁸⁾
- 표준입학허가서*(대학 총·학장 발행)²⁹⁾
 - * 유학생정보시스템 (FIMS) 표준입학 정보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하고,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 및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
- 결핵진단서(해당국가에 한함)
 - * 단, '16.7.1.신청 건부터 결핵고위험국가(붙임10) 국민은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된 지정병원 결핵진단서' 제출
- 가족관계 입증서류(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2) 과정별 제출서류

- ① 전문학사 내지 박사과정(D-2-1 내지 D-2-4)
 - 공통 제출서류
 - 최종학력 입증서류
 - 재정능력 입증서류
- ② 특정 연구과정(D-2-5)
 - 공통 제출서류(단, 표준입학허가서는 제외)
 - 최종학력 입증서류(석사학위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 체재비 입증서류(잔고증명, 연구수당 지급 확인서³⁰⁾ 등)

28) 출입국정보시스템상 연계된 표준입학허가서의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확인으로 제출 갈음

29) 표준입학허가서는 허가번호 또는 사본을 제출받아 IVIS, KVIS에서 번호를 조회하여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본을 제출한 경우 반드시 원본을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

30) 외국인연구생 확인서 상 연구수당 지급 확인으로 체재비 입증서류 대체가능

- 특정 연구과정임을 입증³¹⁾하는 서류(붙임 3의 외국인연구생 확인서 등)
- ※ ①항 및 ②항의 학력 및 재정입증서류는 학력 및 재정능력 심사기준 준용

③ 교환학생(D-2-6)

- 공통 제출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등록금은 본국에서 납부하는 점을 감안)
- 소속(본국) 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 교환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초청 대학의 공문, 대학 간 체결한 학생 교류 협정서 등)
- 1학기 이상을 수학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본국 대학의 재학증명서 등)

④ 일-학습연계 유학(D-2-7)

- 공통 제출서류
- 국립국제교육원장 발행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증명서'(해당자)
- ☞ 주의 : 정부초청장학생 사증발급 대상이고, 외국정부 선발 장학생 및 대학 선발 이공계 우수 장학생은 자격변경의 대상임

⑤ 단기유학(D-2-8)³²⁾

- 공통 제출서류
- 소속(본국) 대학 재학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휴학 포함)
- 재정능력 입증서류

3) 제출서류 간소화 특례

- 불법체류 1% 미만 인증대학 및 비고시국가 출신 인증대학 유학생은 표준입학허가서만 징구

31) 개별 교수의 초청으로 연구과정 사증이 발급되어 입국 후 대학이 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국이 초청(총장명의 초청 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징구 후 사증발급하며 교수 개별 초청은 연구과정 사증 불허

32) 계절학기 수강, 방문학생 등 대하으로부터 표준입학허가서가 교부된 학생의 경우 체류기간이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단기종합(C-3) 자격 보다 D-2-8 사증 발급을 우선 고려하여 발급

2. 어학연수(한국어연수: D-4-1, 외국어연수: D-4-7) 자격

가. 대상기관

- 유학(D-2) 사증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기관(대학) 부설 어학원*
- 고등교육기관 및 외국교육기관**(전문대학 이상의 대학) 부설 어학원

* 대학 총·학장의 권한 및 책임이 미치고 원칙적으로 대학 내에 위치하여야 함(필요 시 정관 등 증빙서류 징구 가능)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기관

※ 평생교육시설(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 포함)·사설학원 등은 어학연수(D-4-1, 7) 사증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나. 해당자

-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상기 교육기관에서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

- 일반연수(D-4) 사증발급*(한국어 연수생: D-4-1, 외국어 연수생: D-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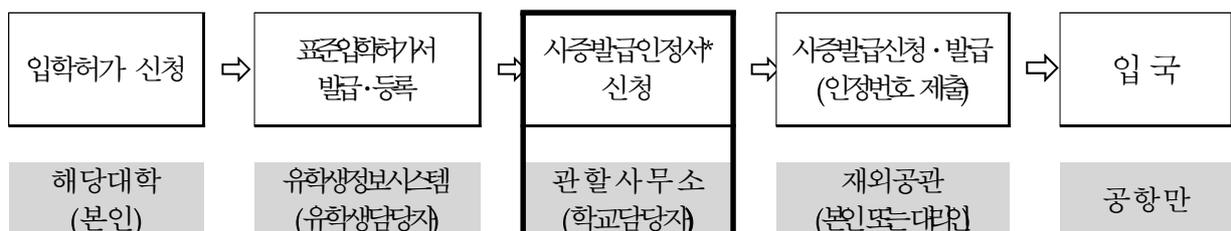
* 90일 이하 체류 어학연수생은 단기일반(C-3-1) 사증 발급 대상

다. 연수과정

- 주중(월-금) 최소 4일 이상, 주당 **주간** 최소 15시간 이상의 어학연수 과정을 주간에 운영(반기 당 최소 300시간 이상 교육)

-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유서 및 수업시수 등이 포함된 모집요강 등을 검토하여 예외 인정(단, 연 600시간 이상 교육 원칙)

라. 발급 절차



○ 대상

-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국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
- 중국 국민 중 인증대학 입학예정자 : 사증 발급 대상
 - ☞ 그 외 중국 국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
- 외국어 연수생(D-4-7): 사증발급인정서
- 그 밖의 외국인유학생: 사증 발급 대상
 - ☞ 특례 : 불체울 1%미만 인증대학 입학예정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 사증발급 인정서 또는 사증 발급 대상(편의에 따라 각 대학에서 선택)

마. 신청 장소

○ 사증발급인정서

- 입학예정대학 소재지* 관할 사무소(출장소)
 - * 분교 입학생은 분교소재지(사업자등록증 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소재지) 관할 사무소(출장소)에서 처리할 것
- 사증포털시스템(www.visa.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유학생담당자에 한함)

○ 사증

-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대한민국 공관에서 신청 원칙
 - ※ 90일 이하 체류 어학연수생은 단기일반(C-3-1) 사증 발급

바. 제출 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여권, 사진1매,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표준입학허가서³³⁾*, 재정능력입증서류**,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입증서류,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의 내용을 포함)

* 유학생정보시스템 (FIMS) 정보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하고 국립국제교육원 초청 장학생은 교육원장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

**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법무부장관 고시국가 국민)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어학연수 필요성이 적다고

33) 사증정보시스템 접수란에 표준입학허가서 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즉시 조회가 가능하므로 재외공관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판단되는 경우 어학연수 필요성 소명자료

※ 학력 및 재정입증서류는 학력 및 재정능력 상세 심사기준 준용

- 불법체류 1% 미만 인증대학 및 비고시국가 출신 인증대학 유학생은 표준 입학허가서만 징구

사. 심사기준

- 중국 등 법무부장관 고시국가(21개국) 출신자는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어학연수 필요성에 대한 실질심사
- 최초 외국어 연수생을 초청한 연수기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실시
- 한국어와 다른 외국어를 혼합하여 연수를 진행하는 경우, 교육시간의 합이 최소 교육시간(반기 300시간, 연간 600시간)을 충족하는지 여부 확인

아. 인증제 적용대상 등

- (인증제) 모든 어학연수생은 기존과 같이 인증제 적용
- (한국어연수와 외국어연수 구분기준) 한국어와 외국어를 혼합하여 연수를 진행하는 경우 과정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언어과정으로 인정
※ 교육과정 구성이 한국어 60%, 영어 40%인 경우는 한국어 과정

3. 기타 가족초청 등

가. 배우자 및 자녀의 초청

- (초청자 요건) 국내 대학의 학사과정 이상에서 6개월 이상 유학 자격(D-2) 으로 체류 중인 자
 - 단, 체류기간이 2년 이내인 D-2-1(전문학사), 어학연수생(D-4)은 인도적 사유가 없는 한 배우자 및 자녀 초청을 제한
- (피초청자 요건) 초청자의 배우자 및 자녀
 - 가족동반에 따른 독립된 주거지와 충분한 재정능력을 입증할 것

- (신청 및 허가 내용) 재외공관에³⁴⁾ 동반자격(F-3), 1년 이하 단수사증 신청
 - 동반 가족 1인당³⁵⁾ 체류 경비를 추가로 입증해야 함
 - 단, 동반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 학비 외에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체류경비를 국내에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함
- ※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인증대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재정능력 입증이 필요하며, 초청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

나. 석박사 과정 부모초청 (15.2.10 시행)

- (초청자 요건) 국내 대학의 석·박사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체류 중인 자
 - 단, 동반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 학비 외에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체류경비를 국내에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함
- (피초청자 요건) 초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로 최대 2명까지 허용
 - 가족동반에 따른 독립된 주거지와 충분한 재정능력을 입증할 것
- (신청 및 허가 내용) 초청자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포함)에 방문동거(F-1-15), 90일 이하 단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초청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회 최대 2년씩 연장

34) 유학생 배우자 및 자녀의 국내 체류자격 변경을 제한하기 위해 사증발급을 규정함, 체류자격 변경 제한

35) 1인기준 월698,677원, 2인기준 월1,189,640원, 3인기준 월1,538,978원

1. 외국인 등록(법 제31조)

○ (제출서류) 신청서, 여권, 사진(6개월 내 촬영 반명함) 1장, 재학(연구생)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결핵검진확인서(대상자)***

* 은행계좌 개설, 숙소 임차 등의 사유로 입학 전 외국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금 납입증명서로 대체 가능(단, 불법체류 1% 미만 인증대학 및 비고시 국가 출신 인증대학 유학생은 표준입학허가서로도 대체 가능)

** 정부 등 초청 국비 장학생도 시행규칙 제74조에 의거 등록 및 등록증(재)발급 수수료 납부 대상자임, 단, 체류허가 시에는 수수료면제 협조요청 소지지³⁶⁾에 한해 수수료 면제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붙임 자료]를 참고

***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시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체류관리과-6858, '15.12.24.)」 적용 대상으로 기존 유학지침의 적용유예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 결핵 검진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16.7.1. 이전 시증발급 자에 한함

2. 등록사항 변경 신고(법제35조, 시행규칙 제49조의 2)

○ (신고사항)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 여권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 학교 변경(명칭 변경 포함)

· 부실대학 등으로의 학교 변경(편입)은 정밀심사 대상

· 석사 또는 박사과정 수료 후 동일 학위과정 수학(석사 → 석사, 박사 → 박사) 목적으로 학교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그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 (신고기한)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장소) 관할 사무소(출장소), 온라인 신청

36)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관에서 교육비와 체제비 전액(일부지원은 제외)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공문(교육비 및 체제비 지원 내역을 구분하여 기재)으로 입증, 협조요청 한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 면제

○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성명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해당자)
- 변경된 학교의 재학증명서 및 전 학교 제적증명서(해당자)
- 석·박사 동일과정 학교변경 필요성 소명자료(해당자)

3. 체류자격 변경 허가

가. 유학(D-2)자격 일반

○ (허가대상) 단기체류자(관광통과 및 시증면제협정 입국자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 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자

① 단기체류자 중 아래 국가 및 자격 소지자는 자격변경 제한³⁷⁾

i) 법무부장관 고시 21개 국가 국민 (단, 해당 국가 국민중 인증대로의 자격변경은 예외적으로 허용)

ii) 고시 21개 국가 국민을 제외한 단기체류자 중 순수 및 단체 관광(C-3-2), 의료관광(C-3-3), 일반관광(C-3-9) 자격³⁸⁾

※ 단, 이전에 유학자격으로 체류하였던 자(휴학생 등)가 단기로 입국하여 유학을 지속하기 희망할 경우 기관장 재량으로 자격변경 심사

② 등록외국인중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 (G-1)자격³⁹⁾ 소지자는 제한

○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소지자), 사진 1매, 수수료⁴⁰⁾
- 기타 서류는 사증발급 시 제출서류에 준해서 징구

※ 어학연수(D-4) 자격에서 유학(D-2)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전 과정의 성적(출결/연수)증명서 제출(FIMS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37) 18.10.1부터 적용

38) 인증대에 대해서도 고시 21개국을 제외한 일반국가 국민중 단체관광, 의료관광, 일반관광 자격자의 체류자격 변경은 제한됨

39) 단, G-1-6(인도적체류허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 없이 허용

40) 수수료 당연 면제는 GKS 장학증서 소지자에 한함, 국제 연구기관 등의 수수료 면제는 명단을 첨부한 공문으로 요청시 검토 가능

- ※ 학력 및 재정능력 심사기준 준용(단, 어학연수 후 같은 대학에서 유학하기 위해 D-2로 변경하는 경우 재정능력 심사기준의 1/2범위로 완화)
- ※ 정부초청장학생이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한 경우, 학력증명서는 국가에 관계없이 국제국제교육원 또는 대학에서 발행한 사본(원본대조필) 징구로 대체(공증 불요)

- 불법체류 1% 미만 인증대학 및 비고시 국가 출신 인증대학 유학생은 표준입학허가서만 징구

☞ 단, '16.7.1.신청 건부터 결핵고위험국가(붙임10) 국민은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된 지정병원 결핵진단서' 제출

- (허가내용) 유학(D-2-1 내지 D-2-5, D-2-7 : 체류기간 2년 이내, D-2-6 및 D-2-8 : 체류기간 1년 이내)
- (허가권한) 관할 사무소(출장소)장

나. 일-학습연계(D-2-7) 자격변경 특례

- (정부초청장학생) 일반유학생(D-2-1~D-2-6)자격으로 체류 중 정부초청 장학생 자격을 취득한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
- (외국정부 선발 장학생 및 대학선발 이공계 우수 장학생) 일반유학생 (D-2-1~D-2-6)자격으로 체류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격변경

① 등록금 전액을 학위 종류별 신청 시 까지 장학금으로 지원 받는 자

| 구 분 | 학사 | 석사 | 박사 및 석·박사통합 |
|-------|----------|----------|-------------|
| 신청 시기 | 6학기 종료 후 | 3학기 종료 후 | 4학기 종료 후 |

※ 장학금 지원여부는 표준입학허가서상에서 확인 가능

②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제출서류) : 장학금 수혜대상 확인 서류 및 대학총장의 추천장

※ 장학수여내역서 : 등록금에 대해 쉰학기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는 내역을 확인하는 등 입학 후 현재까지 교비전액 장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말하며, 장학증서 또는 등록금납입내역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함

○ (허가권한) 관할 사무소(출장소)장

다. 어학연수(D-4-1, D-4-7) 자격

○ (허가대상) 단기체류자(관광통과 및 사증면제협정 입국자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 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자

① 단기체류자 중 아래 국가 및 자격 소지자는 자격변경 제한⁴¹⁾

i) 법무부장관 고시 21개 국가 국민 (단, 해당 국가 국민중 인증대로의 자격변경은 B-2, C-3-2, C-3-3, C-3-9를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허용)

ii) 고시 21개 국가 국민을 제외한 단기체류자 중 순수 및 단체 관광(C-3-2), 의료관광(C-3-3), 일반관광(C-3-9) 자격⁴²⁾

※ 단, 이전에 연수자격으로 체류하였던 자(휴학생 등)가 단기로 입국하여 연수를 지속하기 희망할 경우 기관장 재량으로 자격변경 심사

② 등록외국인중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 (G-1)자격⁴³⁾ 소지자는 제한

○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소지자), 사진 1매, 수수료

- 기타 서류는 사증발급 시 제출서류에 준해서 징구

※ 학력 및 재정능력 심사기준 준용

- 불법체류 1% 미만 인증대학 및 비고시국가 출신 인증대학 유학생은 표준입학허가서만 징구

- 결핵진단서(해당자에 한함)

☞ '16.7.1.신청 건부터 결핵고위험국가(붙임10) 국민은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된 지정병원 결핵진단서' 제출

○ (허가내용) 어학연수(D-4-1, D-4-7: 체류기간 6개월 이내)

41) 41) 18.10.1부터 적용

42) 인증대에 대해 일반국가 국민중 단체관광, 의료관광, 일반관광 자격자의 체류자격 변경은 제한됨

43) 단, G-1-6(인도적체류허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 없이 허용

○ (허가권한) 관할 사무소(출장소)장

라. 자격변경의 특례

○ (유학자격 소지자의 한국어 연수)

- 유학자격 소지자가 유학의 일환으로 1년 범위 내에서 어학연수(D-4-1, D-4-7)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체류자격 변경 불필요

※ 학위과정에 등록하였으나 어학능력이 부족하여 동 대학 부설어학원에서 어학연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 즉, 휴학 또는 등록금 반환 후 별도의 어학연수과정에 등록하는 경우는 체류자격변경허가 대상임

○ (불법체류 아동)

- 불법체류 아동에 대한 체류관리는 「불법체류 아동 관련 세부 조치사항 통보」 지시문서(외국인정책과-2128, 2010.9.7.)에 따름

○ (교환학생)

- 교환학생(D-2-6)이 교환과정을 종료하고 정규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기간연장 허가 시 제출하는 서류를 징구하고 변경허용

※ 과정변경 시 학교 담당자로 하여금 유학생정보시스템 상 교환과정 연수 종료 변동신고 후 해당 정규과정에 대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안내

○ (단기유학 체류자)

- 단기유학(D-2-8)자격으로 체류 중 정규과정(D-2-1~D-2-6)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기간연장 허가 시 제출서류를 징구하고 변경허용

- 정규과정(D-2-1~D-2-6)을 종료하고 단기유학(D-2-8)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기간연장 허가 시 제출서류를 징구하고 변경허용

○ (석·박사 논문준비자 특례)

- 과거 D-2 자격으로 학위 수료 후 다른 체류자격(E-7, D-10 등)으로 자격

변경 하였던 자가 논문준비를 위해 유학자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수료 후 잔여기간 이내인 경우⁴⁴⁾ 예외적으로 자격변경 허용

- 심사 시 지도교수의 논문지도 계획, 학생의 논문작성 계획 등을 징구하여
정밀심사

【참고】 D-2-7(일-학습연계 비자) 소지자의 체류우대 내용

- (우대조건) 선발될 당시 해당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경우
 - (E-7 취업자격 등) 고용계약만 체결하면, 업체의 국민고용 비율적용 면제,
고용계약 범위 내에서 1회 3년씩 체류허가
 - (거주자격 취득)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F-2-7) 취득 시 가점(10점) 부여
 - (영주자격 취득) 영주자격 취득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적용면제 또는 가점 부여
- ☞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 첨단기술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점수제(F-2) 자격자의 영주
자격 변경(F-5-10)시 소득기준 적용면제, 특정분야 능력소지자 가점 상향(10→20점)

마. 기타 자격변경 : 졸업생에 대한 일반연수 자격 등으로의 변경

1) 일반연수(D-4-2)로의 자격 변경

- (대상) 국내대학(전문대 포함) 졸업예정자로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국내기업에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출서류)
 - 연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취업확인서, 연수계획서 등)
 -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국내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 (연수장소)
 - 취업한 해외 소재 내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모기업 또는 외국지사
 - 취업한 해외 소재 외국기업의 국내소재 본사 또는 지사·계열사
- (처리요령) D-4-2, 1년 범위 내(연수계획을 고려한 체류기간 부여)
 - ※ 체재비를 초과하는 연수비를 받는 경우 변경 억제

44) 예시) 박사과정 수료후 E-7, D-8 등으로 2년 체류하다가 다시 논문작성을 위해 D-2-4로 자격변경을 신청할 경우
규정에 따라 수료 후 5년 이내 기간연장이 가능하므로 자격변경허용

2) 구직(D-10) 및 취업자격(E-1 내지 E-7)으로의 자격변경

- 각 자격별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국내에서 자격변경 허용(통합지침 참고)

4. 체류기간 연장 허가(법 제25조)

가. 기본원칙

1) 학사일정을 고려한 체류기간 부여

○ 유학 자격(D-2-1 내지 D-2-7)

- 외국인등록 시 : 익년도 3월말 또는 9월말로 조정* 후 등록증 발급⁴⁵⁾
 - *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만 징구(연장수수료 면제)
- 변경·연장 시 : 2년 이내에서 허가하되, 졸업 예정자의 경우 3월말 또는 9월말까지 허가
 - ※ 전문대학 졸업자(예정자 포함) 중 전공심화 과정에 계속 유학을 원하는 경우, 학교 변경 및 체류기간연장 허용(교육부 요청사항: 전문대학정책과-3101)
 - ※ 다른 자격에서 유학 자격으로 최초 변경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시 처리기준을 준용하여 체류기간을 3월말 또는 9월말로 조정하여 허가
-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허가 신청을 허용하고, 새로이 부여 하는 체류기간은 기존 체류기간 만료일부터 기산(체류관리과-3129, '15.6.16.)

○ 단기유학 자격(D-2-8)

- 일반유학생의 심사기준을 준용하여 인증대학 여부, 입학허가여부, 재정능력, 수학능력 등을 심사
- 외국인등록 시 및 변경·연장 시 : 해당 과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 까지만 허가 (단기유학은 최대 1년까지만 허용)

○ 어학연수 자격(D-4-1, D-4-7)

- 외국인등록 시 : 발급받은 사증내용대로 처리
- 변경·연장 시 : 6개월 이내에서 연수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추가 연장

45) 예시) 체류기간 2년의 유학(D-2)사증을 소지하고 '10.11. 입국한 유학생의 체류기간은 '12.11.까지이나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을 '12.31.까지 연장 조정 (체류기간연장 수수료 면제)

- 불성실한 어학연수 활동자에 대한 기간연장 제한⁴⁶⁾
 - 출석률이 70%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유서 징구 후 연장하고, 2회 이상 연속하여 70%이하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 억제
 - 출석률이 50%⁴⁷⁾ 미만 등 불성실한 학업행태가 확인된 경우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 억제
 - ☞ 합당한 사유 예시 : 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치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입국지연
- 어학연수생의 방학기간이 연수기간의 50%를 넘을 경우 대학의 수업 기간 + 1개월 기간만 체류허가⁴⁸⁾
- 어학연수 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허용

2) 가사휴학 불인정

- 개인적인 사정 및 학점미달 등의 사유로 학업 중단(휴학)자는 체류기간 연장 제한
- 다만,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등 조치

3) 인증대학 재학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대상) 인증대학 재학생 중 평균학점 C학점(평점 2.0) 이상인 자
- (제출서류) 원칙적으로 미 징구
 - ※ FIMS 상 학사정보 확인으로 대체하고 재정입증 서류 생략
- (허가요령) 체류기간 상한(2년) 부여

4) 하위대학 재학생에 대한 심사 강화

46) '18.10.1부터 적용

47) 통상 어학연수는 일일 4시간씩 20주간 운영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출석율이 50% 이하인 경우 총 400시간중 200시간도 수업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이는 체류 허가기간(6개월)내에서 국내에 체류하면서 연수활동이 16% 이하임을 의미함에 따라 기간연장 억제

48) 일부 대학은 연수생의 시간제취업 허용을 악용하여 장기간 방학 기간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악용함에 따라 국내에서 불법취업 등의 활동을 증시시키고 출국시킴에 따라 지속적인 고용을 차단하기 위함임. 출국후 사증발급 등을 통해 재입국이 가능함을 안내

- (대상) 하위대학 재학생 중 평균학점(이수학점 기준) D학점(평점 1.0 이하) 및 연수생의 경우 출석율 70% 이하인 자
 - (제출서류) FIMS 상 학사정보 활용(재학여부, 학점 등), 재정입증 서류
 - (허가요령)
 - 최초 사유서 징구 후 6개월 이내에서 연장
 - 차후, 출석률 및 학점 등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
- ※ 신병치료 또는 인도적 사유 등으로 출석률 및 성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필요 시 실태조사를 거쳐 체류기간 1년 연장

5) 유학중 학적 · 학위 · 학교 등이 변동이 되는 경우 심사 강화

- (적용대상) 아래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i) 이전 대학에서 제적(자퇴, 미등록, 징계 불문)에 따라 타 대학으로 편입학, 재입학하는 경우
 - ii) 대학 내 잦은 전과, 다른 대학 전학 등으로 신청당시 총 체류기간이 전문학사는 3년, 학사과정은 4년, 석·박사과정은 5년을 이미 초과한 경우
 - iii) 동일학위 과정 또는 동일 대학 유학중 야간 또는 주말과정으로 변경된 경우
 - (조치요령) 원칙적으로 체류허가 제한, 출국 후 해당 대학으로 사증을 받아 재입국하도록 안내
- ※ 단, 체류기간 연장 방편의 악용 여지가 없고, 변동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6) 온라인 또는 유학생 담당자를 통한 연장 장려(혼잡 완화 방안)

- (대상) 인증 대학 재학생 등 직접방문 심사대상이 아닌 자

○ (신청예시)

- 온라인 신청 : 유학생 본인 또는 유학생 담당자
 - ※ 유학생담당자의 경우 최대 8명까지 일괄 신청 가능
- 직접방문 : 유학생 본인 또는 유학생 담당자

나. 연장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재학(연구)을 입증하는 서류(FIMS상에서 확인 불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함)
 - (예시) 재학증명서, 교환학생 연장증명서, 연구생 증명서 등
-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FIMS상에서 확인 불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함)
 - (예시) 성적증명서, 출석확인서(필수) 등
- 재정입증 서류(국내 본인계좌 예치금만 인정)⁴⁹⁾
 - (특례1) 인증대학 재학생(C학점 이상인 자 및 인증대학 어학연수생으로 출석률이 70% 이상인 자)은 재정입증서류 제출 생략
 - (특례2) 인증대학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대학, 컨설팅 대학, 모집제한 대학의 유학생이 동일대학에서 동일자격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경우 재정능력 입증 기준의 1/2범위로 완화하여 적용
- 모집요강(연수일정 명시) 또는 연수 계획서(어학연수생에 한함)
 - ※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확인으로 갈음하고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자격변경 시 제출한 표준입학허가서 9번 비고란의 연수과정 참고하여 심사할 것
- '16.7.1.신청 건부터 결핵고위험국가(붙임11) 국민은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적용

다. 체류기간 연장의 특례

49) 관례) 일반연수 체류기간 연장시 유학자격과 달리 재정능력 입증 서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규칙 별표 5의2)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현재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당시 갖추어야 할 요건을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연수 자격의 연장여부 판단할 때 재정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위법하다 볼 수 없다(2017구단73160, 서울행정법원, 2018.1.23))

1) 상급학교 진학예정자

① 어학연수생 또는 단기유학생(D-2-8)

○ (대상) 학기 시작까지의 공백이 3개월 이내인 자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자

i) 한국어 연수 또는 단기유학 과정을 마친 후 동일 대학의 전문학사 이상 과정에 진학 예정인 자

※ 학기시작까지의 기간이 통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사무소장 재량으로 허용(타 학교로의 진학자 포함)여부를 결정하되 대학원대학 및 하위대학 등 진학예정자는 제한적으로 허용

ii) **토픽 3급⁵⁰⁾** 이상자 또는 국내에서 1년 6개월 이상 어학연수 자격으로 체류한 자로 대학 입학조건에 상당하는 어학 능력을 갖춘 자(성적증명서, 지도교수의 확인서 등으로 확인)

○ (제출서류)

- 입학 예정임을 입증하는 서류*

* 원서접수증, 합격증, 등록금 납입(예치)증명서, 입학예정 또는 입학 전형이 진행 중임을 입증하는 학교 공문 등

- 대학 입학조건에 상당하는 어학 능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TOPIK 증명서, 성적증명서, 지도교수 확인서 등 (FMIS 확인 가능한 정보는 FIMS 확인으로 같음)

○ (처리요령)

- 등록금 납입자(일부 예치자 포함): 유학자격(D-2-1 내지 D-2-7) 자격으로 변경

- 합격은 하였으나 등록금 미 납입자: 기존 자격(D-4 또는 D-2-8)으로 3개월 연장

② 전문학사 이상 자격 소지자

○ (대상)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예정자)로 4년제 인증대학 이상에 진학준비 중인 자

50) 교육부 유학생 입학 요건으로 토픽 3급 이상을 권고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 2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 국내에서 3개월간 체류하게 되는 것으로 2급인 경우 출국 후 사증을 받고 입국하도록 함(18.10.1부터 적용)

○ (제출서류) 진학준비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 원서접수증, 합격증, 등록금 납입 (예치)증명서, 진학준비계획서, 입학예정 또는 입학 전형이 진행 중임을 입증하는 학교 공문 등

○ (처리요령) 6개월 이내에서 연장

2) 유학 종료자 등

① 기본원칙

- 출석률(학사과정 이하) 및 시간제 취업을 위한 체류 방편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하는지 여부를 심사
- 체류기간 연장 특례를 받는 유학 종료자에 대해서는 인증대학 재학 여부 불문하고 체재비 입증서류를 징구할 것, 국내 체재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연장 불허
- 동반자(F-3)가 있는 경우 동반자의 체재비도 보건복지부 고시 '16년 기준 중위소득 43%(주거급여 선정기준)⁵¹⁾으로 입증하도록 할 것
- 상급 학위 진학이 아닌 낮은 학위 과정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 국내에서 체류기간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억제⁵²⁾
- 졸업 후 해당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수료, 논문작성) 상태에서 동급의 다른 과정(대학)으로 진학 하는 경우는 체류허가 억제
- 일반대학원에서 동급의 특수대학원 및 행정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 또는, 야간과정 및 주말과정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체류허가 억제

② 전문학사 및 학사과정

- (대상) 학점미달, 졸업시험(토픽 미통과자 포함) 또는 논문 미 통과 등의 사유로 예정된 학사일정을 초과(전문학사 :2-3년, 학사: 4년)하여 수학하고자 하는 자
- (제출서류) 수료증명서, 지도교수 및 유학담당자⁵³⁾ 확인서(논문 미 통과자는 붙임 2 서식), 성적증명서(FIMS 상 학사정보로 대체 가능), 재

51) 1인기준 월698,677원, 2인기준 월1,189,640원, 3인기준 월1,538,978원 - 부담완화를 위해 18년 개정시에도 인상하지 않음

52) 유학 활동을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시 출국 후 사증발급 등을 통해 재입국 가능성을 안내

53) 유학 종료자들의 경우 기간연장, 출국 등에 대해 대학의 학사관리 담당자들이 인지를 하지 못함에 따라 유학담당자 확인 절차를 추가함

정입증 서류, 사유서

※ 빈번하게 결석 등을 하거나 단순히 장기체류의 방편으로 연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 불허

- (처리요령) 수료 후 전문학사는 1년⁵⁴⁾, 일반학사는 2년 이내에서 허용

③ 석사과정

- (대상) 석사과정 수료자로 논문 준비자

- (제출서류) 수료증명서, 지도교수 및 유학담당자 확인서(붙임 2), 성적 증명서(FIMS 상 학사정보로 대체 가능), 재정입증 서류

- (처리요령) 수료 후 3년 이내에서 허용

④ 박사과정

- (대상) 박사과정 수료자로 논문 준비자

- (제출서류) 수료증명서, 지도교수 및 유학담당자 확인서(붙임 2), 재정입증 서류

· 단, 수료당시 인증대인 경우 재정입증서류 제출 생략

- (처리요령) 수료 후 5년 이내에서 허용⁵⁵⁾

· 단, 수료 당시 인증대인 경우 연장 시 1회 2년 부여

5. 자격외 활동 허가

가. 유학(어학연수 포함) 희망자에 대한 특례

1) 유학활동 희망자

○ (기본원칙) 아래 체류자격 소지자의 경우 본래의 체류목적에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학활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

○ (대상자격)

- 단기 체류자로 사증면제 협정국가 국민(B-1)의 단기유학(D-2-8) 및

54) 전문학사의 경우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축소, 2년간 체류를 허용함에 따라 그동안 고의, 편법적으로 졸업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한 것임(18.3.1)

55) 석박사 통합과정(표준입학서가에서 확인) 수료자의 경우도 수료 후 5년 이내 범위에서 허용

어학연수(체류관리과-1554, 17.03.13)

- 등록외국인중 외교(A-1) 내지 협정(A-3), 문화예술(D-1),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방문동거(F-1) 내지 결혼이민(F-6), 인도적체류허가(G-1-6), 방문취업(H-2)자격 해당자. 다만, 별도 지침에 특히 유학활동을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

* 관광취업(H-1)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체류관리과-645, 2015.2.5)

2) 어학연수 희망자

- (기본원칙) 체류외국인이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허가절차 불요
- (대상자격)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

나. 과학기술연구 분야 학생연구원으로의 자격외 활동 특례⁵⁶⁾

- (허가대상) 석·박사과정에 재학중이거나 수료한 학생으로서 소속 대학 이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학생연구원'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하려는 사람
 -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 i)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 8조에 따른 연구기관
 - ii)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iii)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연구원
 -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KAIST 소속 학생은 현행 규정상 학점취득 등을 위해 소속 대학의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일정 수당을 받는 경우이므로 별도 허가가 불필요함
- (처리요령) 연구자격(E-3)으로의 자격외 활동 신청을 받아 허가 처리, 허가 기간 1년, 해당 수수료 징수(유학활동이 아니므로 면제 아님)
- (제출서류) 고용계약서, 연구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56) 과학분야 해외 학술교류 활성화 지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과학분야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20.18. 3)

- (주의사항) 유학생은 연구자격으로의 자격외활동이 금지되어 있음
 - 학생(D-2)의 일반 기업 또는 단체의 연구원으로 자격외 활동은 금지되며, 자격변경을 통해서만 취업이 가능함
 - 소속 대학이 아닌 외부 연구소로의 파견, 지원 근무는 엄격히 금지됨

6. 시간제 취업

가. 기본원칙

- 유학생의 영리,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시간제 취업허가는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하며 전문분야는 제외
 - 전문 분야(E-1 ~ E-7)의 경우 요건을 갖춘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 시행령 [별표1] 에 해당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자격별 개별 지침 적용(예시,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 회화지도강사 등)

나. 대 상

1) 허용대상

- 다음중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유학 체류자격 중 세부 체류자격 D-2~1~D-2-4, D-2-6, D-2-7에 해당하는 사람
 - 어학연수(D-4-1, D-4-7)자격 및 단기 유학(D-2-8)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
 - ※ 단, 어학연수생이 본국에서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졸업예정자는 가능) 경우에는 미성년자에 해당되어 시간제취업허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허가제한

- 유학 및 어학연수생 자격을 소지하였어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간제 취업을 제한함

- 한국어 능력 및 최소 성적 등 관련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 체류기간 연장특례를 받은 유학 종료자 : 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종료(수료)한 사람으로 예외적으로 유학 자격을 허가 받고 체류중인 자
 - ※ 다만, 석·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은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 지연이 확인된 경우에는 불허
 - ☞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 배제
- 사용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유학생(고용주와 사용자가 일치하여야 하며 파견근로는 제한)⁵⁷⁾
- 연구과정(D-2-5)⁵⁸⁾에 유학중인 사람
-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사람 (후단 위반자 처리기준 참조)
- 다음에 해당하는 고용주 및 업종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
 -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 제조업(사업자등록 기준)

다. 시간제 취업 허용 내용

1) 심사일반 기준

- 전공과의 연관성 및 학업과 병행하여 영위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업무인지 여부
-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직종인지 여부
 - ※ 단, 개인과외교습행위는 교습행위의 특수성 및 국내고용시장 보호를 위해 시간제취업 대상에서 제외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시행규칙 제27조의2

57) 취업알선 업체, 인력파견 업체 등에 소속되어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으로 취업하는 경우 허가 제한

58) 연구과정은 표준입학허가서에 따른 유학생으로 볼 수 없으며, 연구과정에서 이미 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유학생 관리체계상 시간제취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② 참조)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평균학점(이수학점 기준), 체류실태 등을 통해 학업과 취업의 병행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대상별 세부 심사기준

① (허용대상) 각 자격별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허가⁵⁹⁾

○ 유학생(D-2)

- (최소 성적)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이상인 경우⁶⁰⁾
- (한국어 능력)
 - 전문학사 및 학사1,2년차 : 토픽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학사 3년차 이상 및 석·박사 : 토픽 4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자
 - ※ 단, 한국어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공휴일 및 방학 무제한, 인증대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시간 규정의 1/2 범위내에서만 허용
 - ※ 단, 모든 학위과정을 영어로 수업하는 과정은 제외(증빙서류 별도 제출시)

○ 어학연수생(D-4)

- (최소 출석)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 이상인 경우
- (한국어 능력) 토픽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단, 한국어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공휴일 및 방학 무제한, 인증대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시간 규정의 1/2 범위내에서만 허용

② 처리요령

- 어학연수생(D-4) :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6개월, 장소는 1곳으로 한정
- 유학생(D-2) :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 장소는 2곳으로 한정
- 신청사항(장소, 근무시간 등) 부실 입력자 등은 해당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59)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요건에 한국어 능력 추가('18.10.1.부터 적용, '18.3월 개정)

60) 입학 후 1학기 종료전에 신청할 경우 성적 서류 제출은 면제

③ 제조업체 제한에 따른 서류심사 기준⁶¹⁾

-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제조업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
- 다만, 제조업, 서비스업 등 복합 업종인 경우 대학이 제출하는 '시간제취업확인서' 상에 기재된 업종이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3) 허용시간

- (어학연수과정) 주당 20시간 이내
 - ※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을 모두 포함하여 주당 20시간 이내임⁶²⁾
- (학부과정) 주당 20시간 이내(인증대학은 주당 25시간 이내)
 - ※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 중은 무제한(주당허용시간 산정시 제외)
- (석·박사과정) 주당 30시간 이내(인증대학은 주당 35시간 이내)
 - ※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 중 무제한(주당 허용시간 산정 시 제외)⁶³⁾

< 한국어 능력별 시간제 취업 차등 운영방안 >

| 대학 유형 | 학년 | 한국어 능력 수준 | | 시작 시기 | 허용시간 | | 주중에 인증대 혜택 |
|----------|--------|-------------|---|-------|------|----------|------------|
| | | | | | 주중 | 주말, 방학기간 | |
| 어학 연수 과정 | 무관 | '18.10.1 이전 | | 6개월 후 | 20시간 | | 25시간 |
| | | 2급 | × | 상동 | 10시간 | | 10시간 |
| | | | ○ | 상동 | 20시간 | | 25시간 |
| 전문 학사 과정 | 무관 | '18.10.1 이전 | | 제한없음 | 20시간 | 무제한 | 25시간 |
| | | 3급 | × | 상동 | 10시간 | | 10시간 |
| | | | ○ | 상동 | 20시간 | 무제한 | 25시간 |
| 학사 과정 | 1~2 학년 | '18.10.1 이전 | | 제한없음 | 20시간 | 무제한 | 25시간 |
| | | 3급 | × | 상동 | 10시간 | | 10시간 |
| | | | ○ | 상동 | 20시간 | 무제한 | 25시간 |
| | 3~4 학년 | '18.10.1 이전 | | 제한없음 | 20시간 | 무제한 | 25시간 |
| | | 4급 | × | 상동 | 10시간 | | 10시간 |
| | | | ○ | 상동 | 20시간 | 무제한 | 25시간 |
| 석/박사 과정 | 무관 | '18.10.1 이전 | | 제한없음 | 30시간 | 무제한 | 35시간 |
| | | 4급 | × | 상동 | 15시간 | | 15시간 |
| | | | ○ | 상동 | 30시간 | 무제한 | 35시간 |

61) 시간제취업관리 강화 후속조치 보완 (체류관리과-5475, 2017.9.12.)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함
 62) '17.4. 전문학사 과정, 어학연수생에 대해 학기중 공휴일 및 방학중 무제한 허용 규정이 삭제됨. 어학연수는 별도 방학기간이 없고 매 3~4개월 단위로 연이어 진행되기 때문임
 63) '17.4. 학기 중 공휴일 및 방학 중 무제한 허용은 학부과정 이상에게만 혜택을 부여함

4) 전문분야에 대한 예외적인 허용(예시)

-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
 - ※ 중국어, 일본어, 기타 외국어 관련 캠프 등도 준용(체류정책과-495, '07.6.28)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 단, 상기 시간제취업 허용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시행령 별표1의 '비전문취업(E-9)' 자격의 허용범위내의 제조업에 대해서는 시간제취업 제한

5) 허가내용

- 자격약호 : D-2-S 및 시간제 취업 업종 입력
- 허가기간 : 체류기간 내에서 1년 이내, 장소는 2곳으로 한정
 - ※ 여권 등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인 날인(취업 장소 및 허가기간 명시)

6) 장소변경 : 허가기간 내 고용주를 달리하여 취업 장소 변경

- 신청방법 : 취업 장소 등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학의 유학생담당자가 직접 방문 또는 전자민원을 통해 취업 장소 등 변경 신고

7) 위반자 처리기준

-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
 - 불법취업(불법고용)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및 그 고용주를 법 제18조에 따라 처벌(심사결정을 통해 강제퇴거, 체류허가 등 결정)
 - 1차 적발 시 경미하여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로 결정한 경우, 범칙금 납부한 날로부터 1년간 시간제취업허가 제한
 - 2차 적발부터는 강제퇴거 원칙

-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⁶⁴⁾을 위반
 - 1차 적발 시 ➡ 법제89조에 따라 향후 1년간 시간제 취업 불허
 - 2차 적발 시 ➡ 법제89조에 따라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
 - 3차 적발 시 ➡ 법제89조에 따라 유학자격 취소

라. 신청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료(면제)
- 시간제취업 확인서⁶⁵⁾,
-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FIMS로 확인이 될 경우 생략)
-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 토픽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 영어 수업 과정인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⁶⁶⁾
 - 단, 제조업이 포함된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참고 4-2 서식) 및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시급 및 근무내용,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사업자등록증상의 당사자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파견업체 등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고용계약은 허용하지 않음⁶⁷⁾

마. 시간제취업 허가의 특례(허가제외 대상)

-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64) **허가조건**이란 허가기간 내의 근무시간, 근무장소(업종) 등 허가당시 조건을 말하며, 허가기간 도과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경우에 해당

65) 사업자등록증상 복합직종으로 제조업이 있는 경우 대학이 시간제취업확인서 상의 업종란에 제조업을 제외한 일종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

66) 제조업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과 근무시간 확인을 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에 제조업이 있는 경우 불허하며, 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과 함께 제조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시간제취업확인서에 대학관계자가 세부 업종을 밝혀 기재하도록 안내

67) 신청시 사업자등록증상의 고용주와 고용계약서상의 고용주가 상이한 파견근로사실이 다수 발견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18.3.1)

허가제 외 대상* 예시

- 유학생이 학점 취득 등을 위해 행하는 인턴십⁶⁸⁾ , 연구프로젝트⁶⁹⁾ 참여로 일정 수당을 받는 경우
 - ☞ 인턴십은 반드시 학점취득과 연계되어야 하며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당 수령은 허용하되, 졸업전 취업 형태의 인턴십은 허용되지 않으며 시간제취업 허가 대상도 아님
 - ☞ 연구프로젝트는 학점취득 등과 연계한 대학 내 프로젝트에서 대학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이외 학점취득과 무관하게 개인이 대학 내 프로젝트 참여로 수당을 받는 경우엔 시간제 취업신고 대상이며, 대학 이외의 기관에서 프로젝트 참여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무자격자의 불법취업에 해당됨
 - 수확중인 학교 내 조교(수업조교 포함) · 도서관 사서 등 근로 장학생으로 참여하여 학교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
 - 가사보조인 등과 같이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일상가사보조 또는 사무보조 등에 따른 사례금 기타 보수를 받는 경우
 -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조언 · 감정, 행사참가, 영화 또는 방송 임시 (1회 및 비연속성) 출연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 (* 체류관리과 -4716, 2010.7.22.)
- ※ 사무소장은 활동의 형태, 보수, 기간 등을 종합적 고려, 허가 대상여부 판단

68) 학사규정에 따라 학점취득을 위하여 행하는 실습 및 인턴 행위(방학중, 학기중 불문)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별도 허가 없이 허용되며, 이는 비록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학업의 연장으로 보아 허용함

69) 연구프로젝트 참여는 지도교수의 감독아래 대학 내 학점취득, 논문작성 등의 활동으로 엄격히 제한(지도교수와 함께 참여 하더라도 프로젝트 주관인 소속 대학이외의 기관인 경우는 허가 필요)하며, 대학 외부에서 주관(공동주관은 제외)하는 연구프로젝트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함

1. 학교의 장의 의무(법 제19조의 4)⁷⁰⁾

가. 담당직원 지정 및 통보

-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이를 관할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 교체 시에도 즉시 교체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대학소재지 관할 사무소(출장소)에서 처리 원칙, 분교는 분교소재지 관할 사무소(출장소)*

- 통보방법

- 유학생정보시스템(FIMS)을 통한 지정 또는 변경된 담당직원 통보(등재)

나. 외국인유학생 변동사유 발생 신고

- 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의 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재학 또는 연수중이라 함은 해당 학교에 학비납부 등 최초의 학생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입학이 된 경우를 말함⁷¹⁾

** 안 날은 학교담당자 개인이 변동 사실을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학사정보가 변동된 것을 의미함

- ① 재학 또는 연수중인 외국인유학생이 매학기 등록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휴학을 한 때(19조의4 2항 1호)
- ② 제적·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가 종료된 때(19조의4 2항 2호)

70) 유학(D-2) 또는 어학연수(D-4-1/D-4-7) 체류자격을 소지한 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경우만 해당하며, 별도의 허가 없이 유학이나 어학연수가 가능한 아래 체류자격은 제외함

※ 유학가능 체류자격 : 외교(A-1) 내지 협정(A-3), 문화예술(D-1),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방문동거(F-1) 내지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협정상 유학이 제한되는 경우 제외), 방문취업(H-2)자격 해당자. 다만, 별도 지침에 특히 유학활동을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

※ 어학연수 가능 체류자격 : 합법 체류자(체류자격 불문)

71) ‘연수중인자’에 대해 입학한 경우에는 그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별도로 동 해석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다. 신고유형별 처리 방법

1) 신고방법

- 유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해 고용·연수(유학)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
- 변동신고 시 유학생정보시스템에 정하는 신고 항목의 개념에 맞게 신고 하여야 하고, 신고 항목이 중복되지 않게 신고하여야 함

2) 출입국관리법상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법제 19조의4)

가) **미등록(미입국)** : 입학하거나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이 매학기 등록기한까지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자체 학사관리 규정에 의해 입학이 취소된 경우

- 의무발생 시점 : 등록기한내 미등록 또는 입학 취소일

나) **휴학** : 재학 또는 연수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휴학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 의무발생 시점 : 휴학원이 수리된 날

다) **제적 또는 연수중단** : 재학 또는 연수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자체 학사관리 규정에 의해 제적 처리되거나 연수중단이 결정된 경우

- 제적은 자퇴제적, 미등록 제적, 징계제적 등으로 구분됨

- 의무발생 시점 : 제적일, 연수중단 결정일, 자퇴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날

☞ A대학에서 제적 되어 B대학으로 편입한 경우라도 A대학은 제적에 따른 신고 의무가 부여됨

라) **소재불명(행방불명)** : 학교 자체 학사 관리 규정에 따라 결석 등에 따라 해당 학생과 연락이 두절되어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경우

- 의무 발생시점 : 행방을 알 수 없는 날

3) 법무부 장관이 정한 의무⁷²⁾ (위반시 주의서 발급, 시행령 24조의8)

72) 동 신고를 누락한 경우는 사무소장 명의의 주의서를 발부(FIMS상)하고, 인증평가 기준기간(1년) 내에 3회 이상, 2년 내에 4회 이상 주의서 발급받은 경우 불체 1%미만 대학 선정 제외 등 우대혜택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

가) 미입국 : 입학허가(표준입학허가서발급)만 받고 미입국한 경우 또는 입학 허가를 받고 해당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의무 발생시점 : 학사 관리 규정상의 최종등록 마감일

나) 사망 : 국내외에서 사망이 확인되어 학사관리 규정상 제적된 경우

- 의무 발생시점 : 제적일

다) 한국국적 취득 : 재학 또는 연수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의무 발생시점 : 국적 취득 사실을 안 날

라) 졸업⁷³⁾ · 연수종료 : 재학 또는 연수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또는 연수를 종료한 경우

- 의무 발생시점 : 졸업생은 졸업증명서(학위증) 상의 학위 수여일, 연수생은 연수 종료일, 교환학생⁷⁴⁾은 대학내 학사관리 규정에 따라 학적을 정리한 날

마) 학위교류(교환학생) : 국내 유학중 대학에 학적은 유지하면서 복수 학위 취득을 위해 제3국에 교환 학생 등으로 파견되어 6개월이상 해외에 머무는 경우(졸업 및 자퇴로 인한 종료는 제외)

- 의무 발생시점 : 교환학생 신분으로 학적이 변동된 날

바) 기타 신고 : ① 외국인 등록기한 도과자 ② 체류기간 도과자

4) 주의서 발부

가) 주의서 발부 기준

○ 의무위반 유형별로 발부 : 동일 기간내, 동일 학위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유형이 다른 경우 주의서를 분리하여 발부

73) 단, 수료 또는 졸업자중 논문준비 등을 위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학사관리 규정에 따라 학적을 정리한 날을 의무 발생 시점으로 간주, 이는 수료생의 경우 대학이 출국 여부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대학 내부규정에 따라 학적 정리 기간으로 통일

74) 교환학생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나 통상 3월, 9월말까지 체류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유학생 규정을 준용하여 2월, 8월 학적 정리시 신고를 허용. 각 사무소마다 수업종료 시점(6월, 12월)과 교환학생 신분 해제 시점(2월, 8월)을 달리 적용함에 따른 기준 통일

- 유형별로 복수인 경우 : 동일 유형내에 다수의 유학생에 대해 위반한 경우 유형별로 통합하여 발부, 유형이 다른 경우 분리하여 발부
- 동일 유형을 위반하였으나 시기가 다른 경우 : 15일 이내 동일 유형의 복수 유학생을 위반한 경우 추가 발부하지 말고 기존 주의서에 위반 사항 추가 기재
- 학부, 석사, 박사 과정이 다른 경우 : 과정이 다르더라도 위반 유형이 동일한 경우 통합하여 발부

나) 주의서 발부 및 처리

- 사무소(출장소)장은 주의서를 공문⁷⁵⁾으로 대학에 송부
 - 담당자는 FIMS에서 주의서 발급 사유 등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관인이 날인된 주의서를 대학에 공문으로 송부
- 주의서를 받은 대학은 15일 이내에 주의서 수령확인을 공문으로 회신
 - 수령확인 회신 시 대학은 수령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을 기재하여 회신

라. 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및 상담

1) 외국인유학생의 학사정보·현황의 관리 및 통보

-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의 각종 학사정보⁷⁶⁾를 관리하고, 그 정보를 매 학기 시작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통보(등재)하여야 함
 - 다만, 각종 학사정보 중 “학점 및 성적사항”은 학위과정 이상 유학생의 정보만을 매년 2월 및 8월말까지(연 2회), “출결사항”은 어학연수생의 정보만을 연수과정 종료 후 15일 이내에 통보(등재)하여야 함
- ※ 논문 준비 등의 대학원 수료자는 학점·성적사항, 출결사항 정보 입력 불요

75) 대학측에서 기존의 주의서 발급 절차(학교 담당자에게 수령 서명을 받고 발급)에 대해 총장 등 책임자가 수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서에 대한 효력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주의서 발급자와 수령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학의 요청으로 별도로 규정 하게 됨, 대학이 기한내 주의서 확인 공문 미회신시 공문으로 그 사실을 기재하여 주의서를 재송부하고 그 기록을 유지 한 후 주의서 교부현황 보고시 첨부

76) 각종 학사정보에는 유학생의 학과, 학번, 출석률, 취득학점, 성적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학사정보 항목은 유학생정보 시스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름

-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의 교육과정별(전문학사, 학사 등), 유학중단 사유별(미등록, 자퇴, 휴학, 제적 등) 등의 현황을 매년 2월 · 5월 · 8월 · 11월 말일까지(연 4회)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통보방식 : 유학생정보관리시스템(FIMS)에 학사정보 및 현황 통보 (등재)

2) 외국인유학생 이탈방지를 위한 상담 및 현황 통보

-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에 대해 주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상담현황을 유지하여야 함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의 소속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상담현황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현황을 제출하여야 함
- 학교의 장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유학생 이탈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함
- 통보방식 : 사무소장(출장소장) 요청 시 외국인유학생 상담현황 제출

2. 사무소장(출장소장)의 조치사항

가. 학교 담당자 지정 처리

-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는 유학생을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여 이를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 교체 시에도 즉시 교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포함)의 유학생 담당자는 유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학교 유학생 담당자에 대해 접수 처리하여야 함
- 처리 방법
 - “유학생담당자관리” → “담당자 지정처리” 메뉴에서 접수 처리

나. 유학생의 변동신고 결재

- 체류자격 D-2, D-4, 유학생의 변동신고 접수 및 결재
 - 자퇴, 제적, 휴학, 졸업/연수종료 등의 경우
 - 출입국정보시스템(ICRM) “체류” → “등록” → “온라인민원신청대장” 처리
 - 소재불명의 경우
 - 출입국정보시스템(ICRM) “조사” → “소재불명자” → “온라인민원신청대장” 처리
- 사무소 담당자는 변동신고 처리(반려처리 포함)시 ICRM “통합민원접수대장”에서 접수, 결재, 민원처리까지 완료해야 함
- 사무소 담당자는 변동신고 심사 과정에서 오류나 법 위반 등의 사항이 있을 경우 반려처리 및 보완요청 후 학교 담당자에게 유학생정보시스템변동신고>신고조회(민원처리)에서 신고취소(철회), 재신고 또는 방문신고를 하도록 통보해야 함
- 등록번호소지자가 미등록자로 신고된 경우 반려 처리 후 학교담당자에게 정보수정 후 재신고하도록 통보해야 함
- 학교 담당자가 직접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신고일 경우에는 반려 사유에 방문하여 처리할 것을 명시하여야 함

다. 변동신고 된 유학생의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

1) 접수 : 변동사유 발생 신고 시 접수·처리 방법

- 각 사무소(출장소) 유학생 담당자는 FIMS를 통해 신고된 변동신고 항목 전체(미등록, 자퇴, 휴학, 제적, 소재불명, 사망, 졸업/연수종료, 한국국적 취득 등)에 대해 접수·처리
- 미등록 유학생의 변동신고 시 FIMS와 ICRM 정보가 자동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학생 담당자는 FIMS[변동신고>변동신고조회(전체) 및 수정]에서 변동 신고된 자를 수시로 확인하여 접수·처리

○ 사망 시는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록정리

2) 유학생 체류허가 취소·변경사유 발생시 사안별 업무처리 기준

가) 자퇴·제적·휴학·소재불명자

① 출국자 (등록증 미반납)

○ 관할 사무소 등 : 참고사항에 신고내용을 정확히 예시하여 (예, 자퇴/제적/휴학) 입력하고 출국일 기준 완전출국 정리

○ 공·항만사무소

- 자퇴·제적·소재불명자 : 법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입국심사

- 휴학생 : 법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입국 심사원칙이나 복학 목적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단기종합 (C-3, 090일) 자격으로 입국 조치(무사증입국 불허국가에 한함, 그 외 현행 입국심사 규정에 따름)

② 국내체류자 : 변동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출석통지서 발부 ⇒ 참고 사항 입력

○ 출석자 : 변동사유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 한 후 국내체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 89조를 적용하여 변동일 또는 출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국하도록 체류기간 조정

※ 신병치료, 가사정리(예 : 전세보증금 회수) 등 장기간 체류를 요할 경우에는 합당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

○ 미 출석자 : 출석통지서 공시송달 (법 제91조 ②항) ⇒ 체류허가 취소* 및 소재불명 입력 (*게시한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취소효과 발생)

나) 수료·졸업·연수종료

① 출국자 (등록증 미반납)

○ 관할 사무소 등 : 참고사항에 신고 내용을 정확히 입력 (졸업/연수종료)

※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재입국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9월말 및 3월말까지

완전출국 정리를 보류하되 동 기간까지 미 입국한 경우 최종 출국일을 기준으로 완전출국 정리

☞ 예시) '18. 2. 10. 졸업 (연수종료) 신고 된 중국인 A (체류기간 '18. 9. 30. 까지)가 '18.1.31 출국 (출국 시 등록증 미반납)한 후 '18.3.30.까지 미 입국한 경우 ⇒ '18.1.31일 기준 완전출국자로 정리

○ 공·항만사무소

- 유학 목적 입국자 : 학기 시작 전 (8월말 또는 2월말) 입국자는 기존 체류자격으로 심사

- 유학 목적 외 입국자 : 재입국허가 (면제) 기간 내 입국자도 최종 출국일 기준 완전출국자로 정리하고 법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심사

☞ 예시) '18. 2. 10. 졸업 (연수종료) 신고 된 중국인 B (체류기간 '18. 8. 31. 까지)가 '18.1.31 출국 (출국 시 등록증 미반납) 후 '18. 2. 28. 유학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 기존 체류자격 입국 심사

② 국내체류자

○ 잔여 체류기간 30일 이내 (졸업 또는 연수종료일 기준) →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출국토록 안내 (전화 등)

○ 잔여 체류기간 30일 초과 (졸업 또는 연수종료일 기준) : 1항 ② 처리 방법 준용

다) 한국국적 취득자

- 체류외국인의 한국국적 취득 시 처리절차 준용

라. 방문신고 관리

○ 학교 담당자가 FIMS에서 방문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ICRM에는 전송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 학교 담당자가 FIMS에서 방문신고를 선택하고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리소홀로 간주하여 사증 발급 제한 등 행정제재

○ 방문신고 처리

- “변동신고” → “변동신고조회(전체) 및 수정” → “방문신고”를 클릭하여 진행상태가 방문신고로 표시되어야 함
- D-2, D-4 체류자격 유학생이 외국인등록 전 완전 출국하여 접수 불가 할 경우 방문민원으로 처리
 - ICRM 온라인민원 신청대장의 신고사항 확인 후 완전출국자로 접수 불가시 반려처리, 학교담당자에게 반드시 유선 연락하여 “변동신고” → “변동신고조회(민원처리)” → “방문신고” 클릭안내
 - 사무소 담당자는 학교담당자 FIMS 신고 후 “변동신고조회(전체) 및 수정”에서 방문신고를 클릭하여 진행상태 방문신고로 표시

마. 변동신고 수정 및 취소

- 정상적으로 변동신고를 한 후 학교 담당자에 의한 수정 및 취소는 불가
- 학교 담당자가 수정/삭제 요청 게시판을 통해 변동신고의 취소 또는 수정 요청을 하면 사무소 담당자는 변동신고 반려처리 후 (수정불가) 학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반드시 FIMS 변동신고>신고조회(민원처리 : D-2,D-4)에서 신청취소(철회) 또는 재신고 할 수 있도록 안내
 - 접수 전 : ICRM “체류” → “등록” → “온라인민원 신청대장” 반려
 - 접수 중 : ICRM “체류” → “등록” → “통합민원 접수대장”에서 반려
 - 결재 후 : 대학의 변동신고 취소 공문 (전자문서 또는 우편) 접수 ⇒ FIMS 담당자에게 기안 취소 요청 ⇒ 접수 상태가 되면 반려 처리
- 취소의 경우 FIMS에서 신청취소(철회)하지 않으면 재학생으로 조회 불가
- 재신고의 경우 신고구분, 사유발생일자 및 신고내용 수정 가능

바.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수정 및 삭제 등

- 사증, 사증발급인정서, 체류자격변경 등의 업무에 필요한 표준입학허가서는 원칙적으로 유학생정보시스템(FIMS)을 통해 확인할 것
 - ※ 다만, 정보통신망이 원활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표준입학허가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원본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사무소 담당자는 표준입학허가서 수정/삭제 요청 게시판을 1일 1회 이상 확인하여 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에는 게시판에 반드시 처리 상황에 대해 답변을 남겨야 함
 - ※ 학교 담당자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표준입학허가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학허가번호가 생성되기 전에는 수정 및 삭제 할 수 있으나 생성된 후에는 수정 및 삭제 할 수 없음
- 표준입학허가서번호가 생성된 후 수정 또는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 관할 사무소 담당자는 수정 또는 삭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함
 - 학교 담당자가 수정을 요청할 경우, 사무소 담당자는 이를 확인하고 “수정허가”를 하여야 하며 “수정”은 학교 담당자가 하도록 함
 - 학교 담당자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사무소 담당자는 중복 여부 등 삭제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허가”를 한 후 “삭제”할 수 있음
- 표준입학허가서를 사용하여 사증,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한 후에는 삭제 대상이 아님(미입국 처리 대상임)
- 처리 방법: “표준입학허가서”→“통합표준입학허가서 관리” 메뉴에서 유학생을 검색한 후 “이름”을 클릭하여 상세화면 하단에 있는 “수정허가” 버튼 클릭

사. 학적(정규/어학) 수정/삭제 관리 게시판 관리

- 사무소 담당자는 학적(정규/어학)수정/삭제 관리 게시판을 1일 1회 이상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 단, 이미 기간연장 또는 체류자격변경을 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영향 여부를 판단하여 심사 할 것
 - ※ 학교 담당자는 학적관리 정보 입력 후 3일내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함

○ 처리 방법

- 시스템 우측 상단의 “학적(정규/어학)수정/삭제 관리 게시판” 클릭→신청 상태가 “신청 중”인 학생의 이름이나 학번 클릭→ “수정/삭제허가”버튼 클릭
- 수정/삭제허가 후 학교 담당자가 수정/삭제 하도록 함(수정허가 후 3일내)

아. 기타 조치사항

- 사무소장(출장소장)은 관할구역 내 외국인유학생이 있는 각 학교별 외국인 현황을 유지하고 유학생관리자에 대하여 유학생의 변동사항 등에 대한 신고가 즉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 강화
- 학교의 장으로부터 제적·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가 종료되었음을 신고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
 - 제적·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에는 ‘다’항의 ‘외국인유학생의 체류허가 취소·변경 사유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
 - 사망 시는“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록정리

1. 시행일

- 시행일시: 2018. 3. 1.
- 단, 개정안 중 아래의 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18.10.1.부 시행
 - i) 비자제한 대학의 석사과정 비자 발급 제한
 - ii) 단기체류자의 체류자격 변경 제한
 - iii) 어학연수 불성실 참여자 및 대학의 체계적인 어학연수과정 운영
 - iv) 어학 연수생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특례요건 강화
 - v) 시간제취업 규정중 한국어 능력에 따른 제한
- 비자제한 대학 등에 제재시점 등은 ‘2017년 인증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별 업무처리 기준 ‘에 따라 처리
- 유학 및 어학연수 자격의 시간제취업 관리 강화 후속 조치 보완 사항 알림(2017.09.12.) 시행 공문 내용 포함하여 개정함

2. 준용규정

-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업무지침 및 체류관리업무지침을 준용하고, 이 지침에 저촉되는 기존 지침 등의 내용은 적용을 배제한다.
- 외국인유학생 등의 관리 및 신고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사용자 매뉴얼”에 따라 처리한다.

3. 시스템 개선

- 서울사무소 전자비자센터 및 출입국정보화센터는 주의서 서식 개정 등 개선사항을 정보시스템(FIMS)에 반영

붙임자료

목 차

| | | |
|-----|-----------------------------|----|
| 1 |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시설 예시 | 1 |
| 2 | 논문지도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 4 |
| 3 |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 6 |
| 4-1 | 시간제취업 대학작성 확인서 | 8 |
| 4-2 | 시간제취업 고용주작성 확인서 | 10 |
| 5 | 번역자 확인서 | 11 |
| 6 | 외국인 변동신고 주의서 | 12 |
| 7-1 | 2017년 인증평가에 따른 업무처리 기준 | 13 |
| 7-2 | 인증평가 불법체류율 조회 및 산정식 | 15 |
| 8-1 | 정부출연 연구기관 목록 | 18 |
| 8-2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19 |
| 8-3 | 특정연구기관 | 20 |
| 9-1 | 중국 학력·학위 인증보고서 검증방법 | 21 |
| 9-2 | 중국 학력·학위 인증방법 변경 | 24 |
| 9-3 | 중국 학력·학위 인증보고서 참고사항 | 25 |
| 10 | 유학생 학력·학위 입증서류 변경 안내문 | 26 |
| 11 | 아포스티유 (Apostille) 협약관련 참고사항 | 28 |
| 12 | 결핵고위험국가(19개국) | 30 |

제2조(정의)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

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종업원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5.8>

③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학점제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 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붙임 2 **논문지도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논문지도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 | | | | |
|-----|--------------|--|---------------------|--|
| 대상자 | 성 명 | | 국 적 | |
| | 외국인등록번호 | | 과정명 (학사, 석사, 박사) | |
| | 학과(전공) | | 졸업학점 (평균) | |
| | 입학일자 전화번호 | | 수료일자 e-mail | |

| | | | | |
|-------------|-----|-------|--|--|
| 논문지도 일 정 | 일 정 | 지도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학생은 수료 후 본인의 지도하에 상기와 같이 (학사/석사/박사) 학위 논문 준비 중에 있음을 확인하며 위 학생이 국내에서 체류하며 논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 .

| | | | | |
|-------------------|---------|-----------|-----|--|
| 지도 교수 | 소속 및 직위 | | | |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연락처 | |
| (확인) 유학담 당자 | 소속 및 직위 | | | |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연락처 | |

○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귀하

Appendix 2

Confirmation Form for Faculty Advisor on a Student's Thesis Schedule

Confirmation Form for Faculty Advisor on a Student's Thesis Schedule

| | | | | |
|------------------------|---------------------------|-------------------------|-------------------------------|---|
| Student | Full Name | | Nationality | |
| | Alien Registration Number | | Degree Program (Master, Ph.D) | |
| | Program of Study (Major) | | C.G.P.A | / |
| | Matriculation Date | | Graduation Date | |
| | Telephone | | E-mail | |
| Thesis Schedule | Date | Guidance Remark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hereby confirm that the student above has completed his/her courses of study and is currently preparing for his/her (Master/Ph.D) thesis/dissertation under my guidance, therefore, I request the Ministry of Justice to extend the student's permitted period of sojourn so that he/she can finish writing his/her thesis/dissertation.

2018. . .

| | | | | |
|------------------------|-----------|----------------------|-----|--|
| Faculty Advisor | Job Title | | | |
| | Full Name | (Stamp or Signature) | Tel | |
| Administration | Job Title | | | |
| | Full Name | (Stamp or Signature) | Tel | |

To. The Head of ○ ○ Immigration (Branch) Office

|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 | | | |
|---|--------------------------|-------------------------------|---------|-------------|
| 연구생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 | 국 적 | | 출신대학명 | |
| | 학 위 | 석사 / 박사 | 전 공 | |
| | 전화번호 | | e-mail | |
| 연구과정 | 연구주관 (성 격) | 예시) 교육부 위탁, 산업부 위탁 등 | 주 관 부 서 | |
| | 연구과제 (담당분야) | | | |
| | 연구 일정 | ※ 연구과제 및 연구일정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 | | |
| | 국내체재비 (증빙서류 첨부 필요) | 자 비 ※ 잔고증명서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 연구수당 | 월 ()원 |
| | 동 반 자 | 유 / 무 | | 명 |
| | 연구책임자 | 성 명 | | |
| 소속 및 직위 (연락처) | | | | |
| <p>위 연구생은 상기와 같이 () 과정을 연구 (예정) 중임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center;">○ ○ 대학교 총 (학) 장 (연구소장) 직인</p> | | | | |
| 연구책임자 | 주 소 | | | |
| | 소속 및 직위 | | | |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연락처 | |
| ○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귀하 | | | | |

붙임 4-1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대학작성 확인서 (한글)

|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 | | | |
|--|-------------|--|-------------|----|
| 대상자 | 성명 | | 외국인 등록번호 | |
| | 학과(전공) | | 이수학기 | |
| | 전화번호 | | e-mail | |
| 취업에 정 근무처 | 업체명 | | | |
| | 사업자 등록번호 | | 업종 | |
| | 주소 | | | |
| | 고용주 | (인 또는 서명) | 전화 번호 | |
| | 취업기간 | | 급여 (시급) | |
| | 근무시간 | 평일 : | 토·일요일 : | |
| <p>위 유학생은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현재의 학습 및 연구 상황으로 볼 때, 상기 예정된 시간제취업 활동을 통해서도 학업(또는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p> <p>※ 시간제취업허가 허용시간은 어학연수생은 주당 20시간, 학부과정은 주당 20시간 이내(인증 대학은 25시간), 석박사과정은 주당 30 시간 이내임.</p> | | | | |
| <p>○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귀하</p> | | | | |
| 유학생담당자 확인란 | 소속 | 00 대학 | | 성명 |
| | 인증대학여 부 |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 | |
| | 직위 (연락처) | | | |
| (인 또는 서명) | | | | |

| Part-time Work of Foreign Student Confirmation Form | | | | |
|--|---------------------------|--|------------------------|------------|
| Applicant | Name | | Alien registration No. | |
| | Department (Major) | | Term | |
| | Tel No. | | e-mail | |
| The expected place of employment | Company name | | | |
| | Business registration No. | | Type of industry | |
| | Address | | | |
| | Employer | (Seal/Sig) | Tel No. | |
| | Period of working | | Wage (per hour) | |
| | Working hours | Weekday: | Sat-Sun: | |
| <p>I hereby confirm that the above named student is enrolled at our university, and considering his/her academic and research progress hitherto, I believe that the part-time job indicated above will not impede his/her learning (research) in school.</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p> | | | | |
|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The head of immigration (branch) office | | | | |
| Confirmation from a Uni. Official. | Uni. | | Name | (Seal/Sig) |
| | IEQAS |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 | |
| | Job Position (Tel No.) | | | |

붙임 4-2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고용주작성 확인서 (한글)

※ 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업이 있는 경우에만 고용주가 작성

|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 | | | |
|---|---------------------|--------------------------|---------------|--|
| 대상자 | 성 명 | | 외 국 인 등록번호 | |
| | 취업기간 | | 급여 (시급) | |
| | 근무시간 | 평일 : _____ 토·일요일 : _____ | | |
| | 근무내용 (구체적 기재) | | | |
| 취업 예정 근무처 | 업 체 명 | | | |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업종 | |
| | 고 용 주 성 명 | | 전화 번호 | |
| <p>위 유학생을 시간제 취업으로 고용함에 있어 위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며, 제조업 등 허가된 이외의 업종에 근로하게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p> <p style="text-align: center;">고용주 성명 : _____ (서명)</p> <p>※ 시간제취업허가 허용시간은 어학연수생은 주당 20시간, 학부과정은 주당 20시간 이내(인증 대학은 25시간), 석박사과정은 주당 30 시간 이내임.</p> | | | | |
| <p>○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귀하</p> | | | | |
| <p>붙임 : 고용주 신분증 사본 1부.</p> | | | | |

확 인 서 (번역자)

| | | | |
|----------|----|------|--------|
| 번역자 인적사항 | | | |
| 국적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 | | | |
| 주소 | | | 연락처(☎) |
| | | | |

| | | | |
|---------------------|----|------|----|
| 번역물 원본의 명의인 인적사항 | | | |
| 국적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 | | | |

| | |
|--------|--|
| 번역 대상물 | |
|--------|--|

첨부한 번역 내용은 원본의 문구에 맞게 사실대로 번역하였으며, 번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에 따른 모든 법적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번역자 :

법무부장관 귀하

주 의 서

| | | | |
|--|---|------------|-----|
| 수신 기관 | | 사업자 등록증 | |
| 주의서 내용 | <위반내용, 해당 외국인 인적사항 등> 주의서 누적회수 : | | |
| <p>외국인 유학생의 수료·졸업 사항 등에 대한 변동신고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주의조치 하니 귀 대학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아울러 1년내 3회이상, 2년내 4회 이상 주의서를 받는 경우 인증대학에게 제공되는 제출서류 간소화 등 우대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사증발급시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p>주의서를 교부받은 기관은 동 주의서 하단의 수령사항 등을 수기로 기재하여 15일 이내에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 | |
| 20 00 출입국관리사무소장 ㉠ | | | |
| 수령확인 | | | |
| 대표자명 | (인 또는 서명) | 생년월일 | |
| 수령 확인자 | 소 속 | | 직 위 |
| | 성 명 | | 연락처 |

첨부 : 수령자 확인자 재직증명서 1부.

1. 기본 원칙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해당 대학별 우대 및 제한 조치 시행

2. 적용 기간

- (인증대학) 사증 등 신청일 기준 2018. 3월부터 2019. 2월까지
 - 단, 인증취소를 받은 대학은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 인증효력이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기간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사증발급의 특성상 신뢰보호, 학사행정 혼란 방지 등을 위하여 우대혜택은 2018년 2월말까지 유지
- (컨설팅대학) 사증 등 신청일 기준 2018. 3월부터 2019. 2월까지
- (비자제한대학) 예정 입학 학기 기준 2018년 2학기 및 겨울학기, 2019년 1학기 및 여름학기

3. 우대 혜택 부여 및 제재 방법

①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

- 해당 학교 입학 예정 모든 국가 외국인유학생의 사증발급, 체류자격 변경(학교변경 포함) 시 학교장 발행 표준입학허가서만을 징구
- 체류기간 연장시 평균 C학점 이상인 경우 재정입증서류 제출 면제
- ※ 외국인유학생 변동사유발생신고 불이행 위반시 우대혜택 제한

② 인증대학(①에 해당하지 않는 인증대학)

- 해당 학교 입학 예정 고시국가(21개국) 이외 국가 외국인유학생에 한하여 사증발급, 체류자격변경 시 학교장 발행 표준입학허가서만을 징구
- 체류기간 연장시 평균 C학점 이상인 경우 재정입증서류 제출 면제
- ※ 고시국가(21개국) 출신 외국인유학생은 지침 상 제출서류 징구

③ 컨설팅 대학 - (대의 비공개)

- 유학생지침에 따라 정밀심사(심사강화)

④비자제한 대학

- 해당 학교에 대해 유학생(D-2)자격 중 전문학사(D-2-1), 학사(D-2-2), 석사(D-2-3), 일-학습연계(D-2-7), 단기유학(D-2-8) 유학생과 어학연수생(D-4-1, D-4-7) 사증(인정서) 발급 및 유학생 전입 제한

※ 석사과정(D-2-3), 박사과정(D-2-4), 학술연구기관 특정연구자(D-2-5), 교환학생(D-2-6)에 대한 사증(인정서)발급 및 기존 재학생에 대한 체류기간연장은 허용

※ 동일 학교 내 어학연수과정 등에서 학부과정 등으로의 과정 이동과 기존 대학 휴학생의 복학은 허용

4.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 발급 대상

-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국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
- 중국 국민 중 인증대학 입학예정자, 정부초청장학생, 교환학생(D-2-6): 사증 발급 대상

- 그 외 중국 국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

- 그 밖의 외국인유학생: 사증 발급 대상

☞ 특례 : 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 해당자는 특례 인정

- ① 인증대학 석·박사과정 입학예정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 전자비자 발급도 가능
- ② 불체율 1%미만 인증대학 입학예정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 발급 대상(편의에 따라 각 대학에서 선택)

5. 인증대학 적용시 본교와 분교 구분 기준(체류관리과-3016, '16.5.26.)

- 아래 5개 대학에 한해 본교와 분교를 구분하여 각각 표기(따라서, 인증평가 결과에 본교만 기재되어 있으면 본교만 해당)
- 그 외 모든 대학은 인증평가 결과에 본교와 분교를 구분하지 않고 본교만 표기(따라서, 본교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분교도 당연히 포함)

| 본 교 | 분 교 |
|-------|---------------------------|
| 건국대학교 | 건국대학교(충주) 또는 건국대학교(글로벌) |
| 고려대학교 | 고려대학교(세종) |
| 동국대학교 | 동국대학교(경주) |
| 연세대학교 | 연세대학교(원주) |
| 한양대학교 | 한양대학교(안산) 또는 한양대학교(ERICA) |

1 검토 배경

- 유학생 인증대학 평가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고 인증대학 평가 관련 업무의 분산을 통한 행정 효율성 도모

2 개선 방안

- 불법체류율 산정 시점 특정을 통한 예측가능성 제고
 - 매년 7월 31일을 불법체류율 산정 기준시점으로 설정
- 불법체류율 등 산정관련 업무절차 개선
 - 유학생 불법체류율 산정관련 업무에 유학생 신분변동 관리를 실제 집행하는 관할출입국이 직접 참여(정정신청 접수, 검토 및 판단 등)

« 세부 진행 절차 »

① 대학별 불체율 산정자료* 작성(매년 8.5., 서울정보화센터) → 샘플테스트 및 자료확정(매년 8.5.~ 8.15., 전자비자센터, 서울정보화센터) → 유학생정보시스템(FIMS)을 통한 대학별 불체율 산정자료 공개**(매년 8.16., 서울정보화센터)

* <붙임>의 기준에 따라 대학별 '분모'와 '분자' 해당자 수, 개별 명단 및 불법 체류율

** 출입국은 관내 모든 대학별 자료 열람가능, 대학은 해당대학 자료만 열람가능

② 정정요청* 및 검토/반영여부 결정(매년 8.16.~9.15., 각 대학 및 관할출입국) → 정정완료 보고(통보)**(매년 9.30., 관할출입국)

* 정정요청 사항이 있는 대학은 관할 출입국에 정정요청, 관할 출입국은 요청사항에 대한 자료검색, 기준검토 등을 통해 수용여부 결정 및 FIMS 반영

** 대학별 정정요청 내역 및 반영여부 등에 대한 일체의 기록을 공문에 첨부해 본부 보고 및 전자비자센터에 동시 통보

③ 대학별 불체율 확정 및 교육부 통보(매년 10.1. 이후, 전자비자센터 및 본부)

-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개선
 - 대학의 불체율 정정요청 및 관할 출입국의 자료정정 등 모든 작업이 유학생정보시스템(FIMS)에서 바로 처리되도록 시스템 개선

[붙임] 불법체류율 대상자 산정 기준

(분자) 최근 1년간 해당 대학에서 발생한 불법체류자 총 수*

* 해당 대학에 재학 또는 재학하였던 유학생 중 기준기간 내에 불법체류하여 산정기준일까지 출국하지 않은 유학생

(분모) 최근 1년간 해당 대학 신규 입학 및 편입한 유학생 수*

* 기준기간 내에 사증발급, 자격변경, 학교변경 등을 통해 해당 학교로 신규 입학, 편입한 유학생 수

- (1년간 기준) 인증평가시 기준 전년도 7월 1일~ 당해 연도 6월 30일
- (대상 유학생) 유학(D-2) 및 어학연수(D-4-1,D-4-7) 체류자격자
비록 어학 연수생으로 초청하였으나, C-3-1으로 입국한 유학생은 제외

○ 분자(불법체류자) 세부 산출 기준

- 체류기간만료일 기준, 산정기준일까지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
단, 소재불명으로 신고되어 체류기간이 조정된 자는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대상자 산정
- 소재불명의 경우 FIMS, ICRM으로 신고 된 내용 각각 확인하여 산정
- 국내 입국 후 학교 변경한 상태에서 불법체류한 자는 최종 소속대학의 불법체류자로 산정
(원 초청 A대학에서 불법체류하지 않고 다른 B대학에 신입학, 편입 등을 통해 전학<입학등록> 후 불법 체류한 경우 B대학으로 불법체류 산정)
- D-2/D-4 외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후 불법체류한 자는 제외
- 체류기간도과하였으나 체류기간만료전 민원접수중 인 자는 대상자 제외
- 산정기준일자까지 완전출국자 및 기준기간 중 합법화된 자는 제외
(해당 유학생이 체류기간 만료전 출국시 등록증 미반납 또는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ICRM상 입력된 기본사항과 불일치하여 ICRM 시스템 완전출국 정리*가 되지 않고 기록상 불법체류자 발생)
*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전 등록증 미반납 출국한 경우 체류기간 도과 이후 입국사실이 없는 자에 대해 완전출국자로 시스템 자동 정리됨

○ 분모(신규 유학생) 세부 산출 기준

- 유학생정보시스템 입학일자 기준 산정기준일동안 체류자격 D-2/ D-4-1, D-4-7으로 입학한 명단
- D-2/D-4자격 체류 유학생이 입학일 전 D-2/D-4외 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제외
(예: 산정기준일이 14.07.01.-15.06.30.인 경우, D-2자격으로 15.03.31.까지 체류허가 받은 자가 15.02.28. E-7으로 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15.03.01. 대학에 신입학한 자는 제외)
- D-2/D-4외 체류자격으로 입학 후 산정기준일 내 D-2/D-4 체류자격으로 자격변경한 경우 산정
(예: 기준일 상동, 14.12.13. C-3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중 15.02.01. 대학에 신입학하여 15.03.01. D-2/D-4 자격으로 자격변경한 경우 대상자 산정)
- 교육기관에서 유학생 입국 전 입학처리(재학생등록)한 경우 대상자에서 누락 사례가 발생하므로, 기준일 1년 동안 해당 교육기관으로 재학생등록 처리한 자는 모두 산정될 수 있도록 주의
(예: 기준일 상동, 14.09.04. D-2 자격으로 입국한 대상자를 교육기관에서 14.09.01. 입학 처리하여 대상자에서 누락된 사례발생. 해당 유학생은 기준일동안 D-2 자격으로 입국한 자로 대상자로 산정)
- 표준입학허가서 입학유형 중 재입학 또는 복학으로 발급된 대상자는 대상자 제외
- 기준기간 내 대상자에 대해 동일대학의 동일과정으로 표준입학허가서가 1건 이상 발급된 경우 1명으로 산정 (단, 동일대학 내 등록과정이 변경된 경우는 과정별 각각 산정)
- 동일인이 기준기간 내 여러 대학으로 신입학한 경우 각 대학 분모로 각각 산정
(예: 기준기간 내 A대학에서 어학연수 6개월 후 기준기간 내 B 대학 어학연수 또는 학부 신입학 한 경우 A, B 두 대학 모두 분모 산정)

○ 공통 주의사항

- 변동신고여부 상관없이 신규유학생, 불법체류자 대상자 산정
- 출입국정보시스템과 유학생정보시스템을 각각 확인하여 기록 일치 여부 확인
- D-2/D-4 사증소지 입국한 미등록외국인(단기체류자)의 분모, 분자 대상자 여부 확인

붙임 7-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규칙 74조 제2호, 수수료 감면 대상]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총리실)

[별 표] <개정 2013.8.4.>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

| 기 관 명 | |
|---------------|------------------|
| 1. 한국개발연구원 | 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2. 한국조세연구원 |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5. 한국법제연구원 |
| 4. 통일연구원 |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6. 한국행정연구원 | 18. 한국교통연구원 |
|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8. 산업연구원 | 20. 한국교육개발원 |
| 9. 에너지경제연구원 |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2. 국토연구원 |
|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 12. 한국노동연구원 | |

▶ 과학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부)

[별 표] <개정 2011.12.31.>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

| 기 관 명 | |
|---|--|
|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 녹색기술센터(GTC) | 13. 삭제<2011.12.31.> |
|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NFRI) |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 3. 한국천문연구원(KASI) | 15.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KIMS) |
|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
|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
| 6.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 18. 한국전기연구원(KERI) |
|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 19. 한국화학연구원(KRICT) (부설) 안정성평가연구원(KIT) |
|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I) | 20.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
|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 ※ 기타 |
|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 한국식품연구원(KFRDI) |
|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 (부설) 세계김치연구소(WIKIM) |
| 12. 한국식품연구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14조에 따른

- 기초과학 연구원 (IBS)

붙임 7-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특정연구기관 목록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시행 2012.7.27] [대통령령 제23993호, 2012.7.26, 타법개정]

| 기 관 명 | |
|--|--|
|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8.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
|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 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 통신산업진흥원 |
|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 |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 연구원 |
|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 |
| 6.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 자력통제기술원 | |
|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 |

붙임 8-1

중국 학력·학위 인증보고서 검증방법

■ 중국교육부 발행 학력·학위 인증보고서

1. 성(省)별 학력인증 신청 대리기관(중국교육부 인가)을 통한 “학력인증보고서”
2. 학생 본인이 중국교육부 운영 신청하여 제출한 학력인증보고서

■ 대리기관 및 개인직접 발급 인증서 비교

| 구 분 | 대리기관 | 개인 직접발급 |
|------|--|---|
| 인증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SI 중국 고등교육 학생정보망 (www.chsi.com.c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SI 중국 고등교육 학생정보망 (www.chsi.com.cn) |
| 신청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省)별 대리기관, 해외대리기관, 북경학력인증센터 * 국내의 경우 공자아카데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본인 온라인 등록 ※ 2001년 이후 학력취득자에 한함 |
| 신청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기관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홈페이지에서 학생 본인이 학적 등록 2) 학적 등록 데이터 일치 여부 확인 후 인증 신청 가능(데이터에서 본인의 학적 기록이 없는 경우, 학교측에 직접 데이터 업로드 요청해야 함) 3) 인증신청 시 중국핸드폰 인증번호 입력 |
| 비 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현지 : CNY 90 (한화 약 18,000원) ▪ 대한민국 : 49,500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CNY 2(한화 약400원)</u> |
| 유효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 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 후 30일 (연장가능) ▪ 연장기간 30일마다 CNY 2(한화 약400원) 추가 예) 12개월 연장 시 CNY 24 ※ <u>유효기간 종료 후 온라인 인증서 조회 불가</u> ※ 중국학력인증센터측에서는 온라인으로 발급한 인증보고의 내용은 인정되나, <u>보존용 문서로서의 가치는 없다는 의견</u>이며, 실제로 중국에서는 문서보존이 필요한 기관에서는 제출받지 않고 있음. |
| 소요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소요기간 : 20~30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소요기간 : 즉 시 |
| 용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 학력인증자료로 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 학력인증 자료로 활용 ※ 문서 보존이 필요한 기관에서는 불인정 |

■ 인증서 검증방법

1. 성(省)별 학력인증 신청 대리기관을 통해 발급한 “학력·학위 인증보고서”

가. 학력인증보고서

- 1단계 : “学历与成绩认证(학력 성적 인증)” 클릭
- 2단계 : “高等教育学历查询 (고등교육학력 조회)” 클릭
- 3단계 : (1) 证书编码(증서번호) ⇒ (2) 报告编号(보고번호) ⇒ (3) 验证码
(인증번호-옆칸에 보이는 숫자) 입력 후 ⇒ (4) 查询(조회) 클릭
- 4단계: 조회 결과 확인
 - (1) 조회자로부터 제출받은 인증보고서와 동일한 보고서 확인 가능
 - (2) 인증 보고서의 발급내역이 없는 경우, “시스템거부정보” 로 나옴
{거부내용} ‘일치하는 조건의 데이터 없음! 아래 원인으로 인한 가능성 있음!’
 - 1: 입력 오류, 확인 후 다시 입력
 - 2: 각종 원인으로 학력정보가 온라인상에 없으면, 학력인증센터로 문의
 - 3: 인증되지 않은 학력 또는 위조 학력의 경우

나. 학위인증보고서

“학위인증보고서” 수령 후, 조회사이트 (<http://www.cdgd.edu.cn>) 접속

- 1단계: 아래 (1)-(3) 중 해당되는 조회하고자 하는 항목 클릭
 - (1) 中国學位認證系統 (중국학위인증시스템)
 - 학위인증보고서 및 본과석사성적인증보고서 조회
 - (2) 中国高中会考高考认证系统(중국고등학교후이카오, 까오카오 인증시스템)
 - 일반고등학교 학력인증보고서 조회

(3) 中国中等职业教育认证系统(중국중등직업교육인증시스템)

- 직업고교 또는 중전 졸업자의 학력인증보고서 조회시 클릭

※ 2단계부터는 조회 방법이 모두 동일함

- 2단계: 查询已完成報告(완성된 보고서 조회) 클릭

- 3단계: (1) 申请編號 (APPLICATION NO.)

(2) 報告編號 (FILE NO.)

(3) 验证码 (Validating Code) 옆에 보이는 숫자 입력 후,

(4) 查询/Check 클릭

- 4단계: 조회 결과 확인

(1) 조회자로부터 제출받은 인증보고서와 동일한 보고서 확인 가능

(2) 조회자로부터 제출받은 인증보고서의 발급 데이터가 없는 경우, 경고창이 뜬다

2. 개인이 직접 발급한 “학력·학위 인증보고서”

가. 진위 확인 방법

- 1단계 : 홈페이지 (<http://www.chsi.com.cn>) 접속 후 칸 클릭

- 2단계 : 보고서 우측 인증번호 입력

나. 인증기간 1개월 후 만기에 따른 해결방법

- 제출자가 온라인 상으로 사증심사 완료시점 까지 인증기간 연장 신청 가능

※ <http://www.chsi.com.cn/xlcx/rhyq.jsp> 인증 절차 참고

붙임 8-3

중국 학력.학위 인증보고서 참고사항

| 발급기관 | 인증보고서 제목 (중국어) | 인증보고서 내용 | 언어 |
|--|-------------------------------|---|-----|
| 전국고등학교 학생정보자문 및 취업지도중심 (학력인증센터) www.chsi.com.cn | 中国高等教育 学历认证报告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대학원/박사 졸업증서 인증 • 대학교 독학학력인정증서 인증 • 전문대학교 졸업증서 인증 | 중국어 |
| | 中国高等教育 成绩单认证报告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및 전문대학교 졸업자 성적표 인증 | 중국어 |
| 교육부학위 및 연구생교육발전중심 (학위인증센터) www.cdgck.edu.cn | 认证报告 CREDENTIALS REPOR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석사/박사 학위증서 인증 • 대학교/대학원 졸업자 성적표 인증 • 대학교 재학증명서 인증 • 대학교 수료증서 인증 • 会考合格证(후이카오-고등학교 졸업시험 합격증서) 인증 • 会考成绩表(후이카오-고등학교 졸업시험 성적표) 인증 • 高考成绩表(까오카오-대입시험 성적표) 인증 • 中等职业专门学校(중등직업전문학교) 졸업증서 인증 • 한국인 고등학교 졸업증서 인증 | 영어 |

최근 일부대학 유학생이 위조학위증 등을 제출하고 유학 (어학연수 포함)사증 발급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13.5.1.부터 국내에서 유학 (D-2) 및 어학연수 (D-4-1) 사증발급인정서 및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학위 (학력) 입증서류가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단,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

1. 대상 : 법무부장관 고시 21개국 출신 국가 국민 또는 동 국가 소재 대학에서 학위 (학력) 취득한 사람으로 국내에서 유학 (D-2), 어학연수(D-4-1) 사증 발급인정서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는 자

※ 단, 고시국가 출신이라도 국내 대학 등에서 학위 (학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을 받지 않아도 됨 (학위증 원본 심사 후 사본 제출로 같음)

<법무부장관 고시 국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총 21개국)

2. 학위 (학력) 입증서류 : 아래 ①,②,③ 중에서 택일

- ①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위 (학력) 입증서류
- ② 출신학교가 위치한 국가의 한국영사 또는 주한 출신학교 소재지 국가 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학력 등 입증서류
- ③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력·학위 등 인증보고서 (중국 내 학력·학위 취득자에 한함)

<적용 예시>

가. 중국인이 미국에서 학위 (학력)를 취득한 경우 : Apostille 확인, 미국 주재 한국 대사관 영사확인 또는 한국주재 미국 대사관의 영사확인 후 제출

나. 미국인이 중국에서 학위 (학력)를 취득한 경우 :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에서 인증보고서 발행 후 제출

3. 중국교육부 학력·학위 등 인증보고서 신청 방법

- ① 학력인증 : 중국 전국 고등교육학생정보자문 및 취업지도센터
(교육부 학력인증센터, <http://www.chsi.com.cn>)에 신청
- ② 학위인증 : 중국 학위 및 연구생 교육발전중심
(교육부 학위인증센터, www.cdgdc.edu.cn)에 신청
- ③ 한국 내의 공식 업무대리기관인 서울공자아카데미(사단법인 한중문화협력연구원, <http://www.cis.or.kr>)를 통해 신청 (문의:02-554-2688)

※ ①, ②, ③항 모두 인증서 발급까지 약 30일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여 준비 바람

※ 개인이 직접 ① 또는 ②번 사이트에서 인증 받은 학력입증서류도 예외적으로 인정하나 이 경우 온라인상 검증이 가능한 기간으로 한정 (통상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유효, 연장 가능)

4. 기타 참고사항

- ① 최종학력이 고등학교인 경우 졸업증명서, 대학 이상인 경우 학위 또는 학위가 표시된 졸업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 ② 현재 대학 등 재학 중인 자로 국내 대학 등에 편입하는 경우 학력 입증방법
 - 최종학력 (학사 이상인 경우 학위) 증명서 및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재학증명서
- ③ 외국어로 되어 있는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은 번역자 확인서 및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번역자 확인서는 붙임 문서 참조)

④ 중국 학위 (학력) 취득자 관련 참고사항

<중국고등학교 졸업자의 학력 입증방법>

○ 일반고등학교 졸업자 (아래 중 택일)

- 까오카오 (高考) 성적표 (교육부 인증) 및 졸업증명서 (해당학교장 발행)
- 후이카오 (会考) 합격증서 또는 후이카오 (会考) 성적표 (교육부 인증) 및 졸업증명서 (해당학교장 발행)
-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 인증을 받은 졸업증명서

※ 졸업예정자의 경우 해당학교장 발행 성적증명서 (3학년 1학기 이상)로 졸업증명서 대체가능

○ (중등)직업고등학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교육부 인증)
-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 인증을 받은 졸업증명서

<중국 대학이상 학위소지자의 학력(학위) 입증방법> (아래 중 택일)

- 학위 보고서 또는 학위가 표시된 졸업증명서 (교육부 인증)
-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 인증을 받은 졸업증명서 등

붙임 10

아포스티유 (Apostille) 협약관련 참고사항

■ 아포스티유 협약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07.7.14. 부 우리나라에 발효)

- ▶ 아포스티유 확인이 된 협약가입국의 문서는 재외공관 영사확인과 동일한 효력
-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신청 시 첨부서류 중 영사확인을 요건으로 하는 제출서류는 기존 영사확인(비체약국)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거친 문서도 인정(출입국심사과-8354, ’07.8.13)

■ 아포스티유 가입국⁷⁷⁾ 현황

2017.09.21.기준

| 지역 | 계 | 가입국 |
|------|----|---|
| 아시아 | 7 | 대한민국, 몽골*, 브루나이, 일본, 인도, 중국일부(마카오, 홍콩), 타지키스탄 |
| 중동 | 4 |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
| 유럽 | 46 |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기스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
| 아메리카 | 31 | 미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안티과바뷰다, 바하마, 바바도스, 벨리즈, 두라스,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나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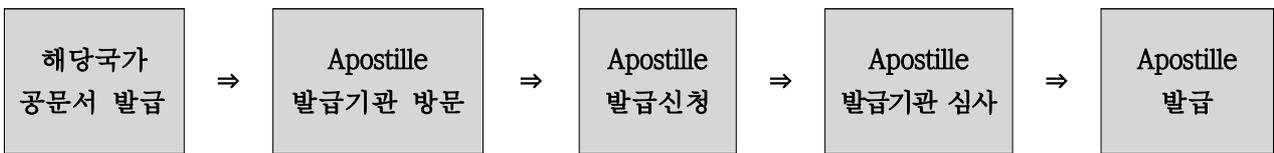
77)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홈페이지 (www.hcch.net)에서 최신자료 조회 가능

| | | |
|-------|----|---|
| 아프리카 | 11 |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 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
| 오세아니아 | 11 |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세이셸제도, 쿡제도, 통가, 피지, 호주 |

* 불법체류율이 높아 법무부장관이 따로 고시한 국가 중 아포스티유 가입국

■ 아포스티유 발급절차

가. 공문서 (국·공립학교 등)



나. 사문서* (사립대 등)



* 사문서의 경우 해당 국가 공증인법 및 변호사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해당국가에서 공증을 받은 후 제출하면 아포스티유 확인 가능

붙임 11 **결핵 고위험 국가(19개국)**

| 연번 | 국 가 명 |
|----|--------------|
| 1 | 캄 보 디 아 |
| 2 | 미 안 마 |
| 3 | 필 리 핀 |
| 4 | 파 키 스 탄 |
| 5 | 방글라데시 |
| 6 | 몽 골 |
| 7 | 인도네시아 |
| 8 | 인 도 |
| 9 | 네 팔 |
| 10 | 베 트 남 |
| 11 | 태 국 |
| 12 | 러시아(연방) |
| 13 | 말 레 이 시 아 |
| 14 | 우즈베키스탄 |
| 15 | 중 국 |
| 16 | 스 리 랑 카 |
| 17 | 동 티 모 르 |
| 18 | 키르키즈스탄 |
| 19 | <u>라 오 스</u> |

* 출처: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17, WHO

※ 발생율, 유병율은 인구 10만 명당 발생 수 및 유병 수